

투자 위험 등급 1등급(매우높은위험)						삼성액티브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 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삼성뉴딜코리아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뉴딜코리아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를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삼성뉴딜코리아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삼성액티브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집합투자업자(<http://www.samsungactive.co.kr>)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4. 작 성 기 준 일 : 2026.10.14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6.10.29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10조좌(최초설정일 기준 1좌 1원)]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2020년 6월 29일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모집개시일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 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이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 요약정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마. 특수형태
 -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3. 모집 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 나.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변경 내역
 - 다.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나. 종류형 구조
 - 다. 모자형 구조
 - 라. 전환형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가. 투자 대상
 - 나. 투자 제한
 -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나. 수익 구조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11.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 가. 매입
 - 나. 환매
 - 다. 전환
- 12. 기준가격 산정 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다. 보수 및 지급내역에 관한 사항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 이익 배분
 - 나. 과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재무정보
 - 가. 요약 재무정보
 - 나. 재무상태표
 - 다. 손익계산서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가. 연평균 수익률
 - 나. 연평균 수익률 추이
 -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제4부 |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가. 회사 개요
 - 나. 주요 업무
 -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라. 운용자산 규모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가. 신탁회사
 -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 라. 채권평가회사

제5부 |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가. 수익자총회
 - 나. 잔여재산분배
 -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라. 손해배상책임
 - 마. 재판관할
 -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증권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가. 의무 해지
 - 나. 임의 해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 보고서

나. 수시 공시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가. 의무투자

나. 투자목적의 투자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 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본 투자신탁을 "삼성중소형FOCUS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 동 증권(일괄)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설명서 포함)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11. 이 투자신탁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설정된 뉴딜펀드가 아니며, 세제혜택 등 뉴딜 정책의 직접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즉, 정부의 뉴딜정책은 본 펀드의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단순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정부의 뉴딜 정책과 관련이 없는 기업에 투자가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요약정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6.10.14)

삼성뉴딜코리아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펀드 코드: D6849)

투자 위험 등급 1등급(매우높은위험)						<p>삼성액티브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p> <p>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p> <p>해당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국내 주식 투자에 따른 주식 등 가격변동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삼성뉴딜코리아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신탁재산의 60% 이상 투자합니다. 미래 세상의 변화에 대비하는 전략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예상되고, 변화를 선도하며 진입 장벽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 소수 집중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	--

투자비용	클래스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 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 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 보수 ·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 이내	1.2000%	0.560%	1.33%	1.2030%	219	341	470	746	1,56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없음	1.5400%	0.900%	1.6%	1.5431%	154	313	479	837	1,9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없음	1.1800%	0.540%		1.1828%	118	240	367	642	1,45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퇴직연금))	없음	1.1000%	0.460%		1.1028%	110	224	342	598	1,359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 이내	0.9200%	0.280%	0.98%	0.9231%	142	236	335	548	1,182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없음	0.9100%	0.270%		0.9129%	91	185	283	495	1,125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1.0900%	0.450%	1.03%	1.0931%	109	222	339	593	1,347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퇴직연금))	없음	0.8700%	0.230%		0.8730%	87	177	271	474	1,076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0.8900%	0.250%		0.8930%	104	196	292	499	1,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 (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되, 기타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이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6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5/10/15~ 26/10/14	24/10/15~ 26/10/14	23/10/15~ 26/10/14	21/10/15~ 26/10/14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20-09-14	42.52	34.51	25.23	10.28	12.02
	비교지수(%)	2020-09-14					-
	수익률 변동성(%)	2020-09-14	54.36	41.43	35.95	30.50	28.91

투자실적
주이
(연평균
수익률)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중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주식)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심주현	1993	책임(Manager)	3개	2,943억원	24.19%	67.09%	36.9%	79.07%	8년 5개월

-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없음

-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국내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등 가격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정 종목 및 섹터 집중 투자 가능 위험	이 투자신탁은 뉴딜이라는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친환경 및 디지털 관련 기업 등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종목 또는 업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특정 종목 또는 업종의 성과에 따라 투자신탁의 성과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종목 또는 업종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서 최초 목적인 투자목적과는 다르게 급격한 가격변동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원본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일반 주식형 투자신탁보다 더 높은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교지수 부재 위험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주로 친환경 및 디지털 관련 기업 등 뉴딜이라는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특정지수를 투자자의 기대수익률 판단 기준으로 제공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투자신탁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주식형 투자신탁보다 더 높은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고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 판단 시 관련 사항을 한층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4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산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 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 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samsungactive.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세계혜택계좌 등 투자자의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1. 이연판매보수(CDSC) 적용기준 및 내용 - 해당사항없음 2. 전환형 구조 -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삼성액티브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전화:02-3774-7775)					
모집기간	2020년 6월 29일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모집개시일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모집·매출 총액	10조좌(최초설정일 기준 1좌 1원)		
효력발생일	2026.10.29		존속기간	해당사항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http://www.samsungactive.co.kr)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	판매수수료선취형(A)는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10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미징구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는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10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슈퍼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투자권유 및 상담 서비스 없이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클래스)	펀드코드
삼성뉴딜코리아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D6849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D7155
수수료선취-온라인(Ae)	D7156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D715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D7158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D715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D716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D716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D716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D716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DB785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DB78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퇴직연금))	DB787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퇴직연금))	DB788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D7165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DB784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퇴직연금))	DH675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중도환매가능)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납입가능)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 해당없음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부의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 예정금액

10조좌(최초설정일 기준 1좌 1원)

-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기간	2020년 6월 29일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모집개시일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samsungactive.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	특이사항 없음
매출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주)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부의 "11.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클래스)	펀드코드
삼성뉴딜코리아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D6849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D7155
수수료선취-온라인(Ae)	D7156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D715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D7158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D715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D716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D716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D716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D716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DB785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DB78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퇴직연금))	DB787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퇴직연금))	DB788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D7165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DB784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퇴직연금))	DH675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20. 9.14	최초 설정
2020.10.16	클래스 추가(C-P, C-Pe, Cp(퇴직연금), Cpe(퇴직연금), S-P)
2021. 3.25	S-P(퇴직연금) 클래스 추가
2021. 5.27	운용역 변경(권동일 운용역→최경철 운용역)
2023. 1.27	운용역 변경(최경철 운용역→조용화 운용역)
2025. 1. 8	운용역 변경(조용화 운용역→한연우 운용역)
2026. 9. 8	운용역 변경(한연우 운용역→심주현 운용역)
2026.10.29	투자위험등급 변경(2등급(높은 위험)→1등급(매우 높은 위험))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 또는 신탁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삼성액티브자산운용주식회사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삼성생명 서초타워 8층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전화 : 02-3774-7775)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의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주식)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심주현	1993	책임(Manager)	3개	2,943억원	24.19%	67.09%	36.9%	79.07%	8년 5개월

성명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심주현	2018년 04월 ~ 2021년 04월 신영자산운용 마라톤가치본부 2021년 05월 ~ 現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운용1본부 운용2팀

- (주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주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없음
- (주3)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두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4)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5)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주6)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운용역	운용 기간
조용화	2023. 1. 27 ~ 2025. 1. 7
한연우	2025. 1. 8 ~ 2026. 9.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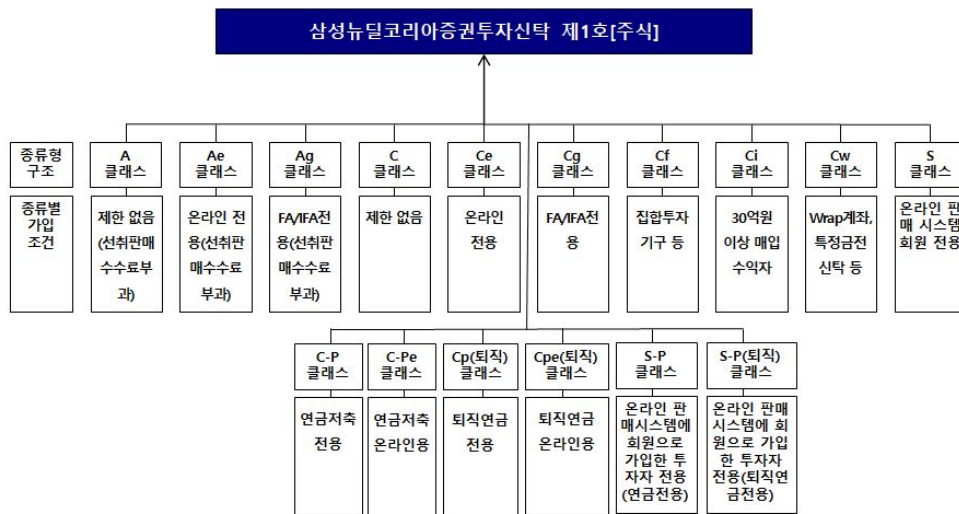
운용역	운용 기간
심주현	2026. 9. 8 ~ 현재

주1) 2026.10.29 기준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	판매수수료선취형(A)는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10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미징구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는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10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경로	온라인슈퍼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투자권유 및 상담 서비스 없이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최소 가입금액이 정해져 있는 고액투자자에 한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	집합투자증권 및 기관투자자 등에 한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전용 등의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무권유저비용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되는 경우는 제외)

(2)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클래스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온라인(Ae)	온라인(On-Line) 판매 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자로부터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요청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 없이 본 집합투자증권의 매입하는 투자자 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가입제한이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온라인(On-line) 판매전용 수익증권으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자로부터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요청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 없이 본 집합투자증권의 매입하는 투자자 전용으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30억원 이상 매입한 수익자 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Wrap Account, 특정금전신탁, 보험업법 상의 특별계정 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매수 청약할 수 있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 없이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 없이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클래스(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퇴직연금))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 없이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전용 수익증권(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 설립되는 경우는 제외)

(3)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클래스종류	수수료			보수(연,%)			
	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집합투자	판매	신탁	일반사무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 이내	-	없음	0.60	0.56	0.02	0.02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 이내	-	없음	0.60	0.28	0.02	0.02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납입금액의 0.65% 이내	-	없음	0.60	0.37	0.02	0.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	없음	0.60	0.90	0.02	0.02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	없음	0.60	0.45	0.02	0.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 저비용(Cg)	-	-	없음	0.60	0.60	0.02	0.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	-	없음	0.60	0.03	0.02	0.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객 (Ci)	-	-	없음	0.60	0.20	0.02	0.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웹(Cw)	-	-	없음	0.60	0.00	0.02	0.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 금(C-P)	-	-	없음	0.60	0.54	0.02	0.02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	-	없음	0.60	0.27	0.02	0.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 금(Cp(퇴직연금))	-	-	없음	0.60	0.46	0.02	0.0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e(퇴직연금))	-	-	없음	0.60	0.23	0.02	0.02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3년 미만 환매시 환 매금액의 0.15%이내	없음	0.60	0.25	0.02	0.0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 연금(S-P)	-	-	없음	0.60	0.16	0.02	0.0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 연금(S-P(퇴직연금))	-	-	없음	0.60	0.15	0.02	0.02

주) 자세한 사항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자형 구조

- 해당사항 없음

라. 전환형 구조

- 해당사항 없음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증권투자신탁[주식]입니다. 미래 세상의 변화에 대비하는 전략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예상되고, 변화를 선도하며 진입 장벽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 소수 집중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함을 투자 목적으로 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주식	60% 이상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생한 것 또는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함),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하며, 이하 “주식”이라 한다)
2)	집합투자증권	40% 이하(단,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투자는 10%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증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다만, 공모에 한함) (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3)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 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증권의 대여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에 대여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기준
5)	증권의 차입	20% 이하	증권의 차입
6)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 2)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④ 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간 ②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③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④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 2)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4),5)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 ①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 ②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③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④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⑤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주1) 상기 투자비율은 투자자산별 투자금액(파생상품의 경우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적용)이 투자신탁 자산총액(파생상품의 경우 상품별로 달리 적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합니다.
- 주2)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3) 증권의 대여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가. (ETF의 경우) ETF 매매 편의성 증대 : ETF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들에게 보유증권을 대여할 수 있으며, 대차거래에 참여한 시장조성자들은 ETF 호가 수량 확대,호가 스프레드 축소 등을 통해 ETF 매매가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ETF를 매매
나.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다.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 주4) 증권의 차입 : 효율적 운용, 보유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나. 투자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집합투자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단,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와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음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동일종목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이하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p>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하 이 목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은행·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p>	
동일법인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사모집합투자증권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동일 집합투자증권 투자 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총수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단,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투자한도 초과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한도(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제외)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투자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에 대한 취득금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총액비중까지 취득할 수 있다.	
계열회사 투자한도 초과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투자신탁재산으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보수 및 수수료등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 관리

- (1) 이 투자신탁은 ‘뉴딜’ (New Deal, 위기가 불러오는 새로운 기회에 투자)이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여, 미래 세상의 변화에 대비하는 전략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투자신탁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설정된 뉴딜펀드가 아니며, 세제혜택 등 뉴딜 정책의 직접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즉, 정부의 뉴딜정책은 본 펀드의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단순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정부의 뉴딜 정책과 관련이 없는 기업에 투자가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 (2) 세상의 변화를 선도하며 기술력의 진입장벽이 높은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미래차, 디지털플랫폼, 기술혁신 등 그린, 디지털 관련 기업에 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3) 산업 및 기업자체의 성장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소수 집중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1) 그린: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

- ① 기업의 활동 자체가 친환경 적이거나 친환경 제품 및 관련 서비스를 통해 수익 창출하는 기업을 발굴합니다.
- ②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독보적인 에너지 기술을 보유한 기업, 친환경 미래차 기업, 풍력이나 태양광 등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폐기물 재활용이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 친환경 기업에 투자합니다.

2) 디지털: 플랫폼 등 사회적 효용성을 증가시키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

- ① 비대면, 온라인, 롱테일(틈새시장) 트렌드에서 성장하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을 발굴합니다.
- ② 정보 및 시간 격차 해소를 통해 소비자 및 사회 효용을 증대시키는 플랫폼 기업과 관련 기술 또는 서비스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합니다.
- ③ 고령화, 인구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축소 관련 바이오, 핀테크(Fin Tech, 금융과 기술을 합성하여 만든 단어)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 사회적 효용성을 증가시키는 기업에 투자합니다.

3)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이나 안정적인 배당수익이 기대되는 리츠 종목 등을 일부 편입할 수 있습니다.

(4)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투자신탁은 친환경 및 디지털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특정지수를 투자자의 기대수익률 판단 기준으로 제공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집합투자업자는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 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의 변화, 투자전략의 변경 등으로 인해 비교지수로서 적합한 지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지수로 비교지수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투자신탁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 판단 시 관련 사항을 한층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이 투자신탁은 포트폴리오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운용성과를 분석하고 포트폴리오 전체 밸류에이션, 기업의 사업모델 및 경영진, 현금흐름 등을 점검합니다.

(6)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본 투자신탁을 "삼성중소형FOCUS증권모투자신탁[주식]"(현재 기준)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하며,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에는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수익구조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신탁재산의 60% 이상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재산이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수익구조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수익구조는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시장상황 변동이나 기타 사정에 의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수익구조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국내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등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과세 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자산의 예: 해외투자 시 이익 및 환차손익, 채권투자 시 이자수익 등 *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REITs의 유동성에 따른 위험	증권시장에서 REITs 개별 종목의 거래량이 부족할 경우,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가격으로 매매를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규모펀드 관련 위험	집합투자기구의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삼성중소형FOCUS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하며,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에는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 등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 등에 일부 투자하기 때문에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의 운용구조, 투자성과, 보수, 거래비용 등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정 종목 및 섹터 집중 투자 가능 위험	이 투자신탁은 뉴딜이라는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친환경 및 디지털 관련 기업 등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종목 또는 업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특정 종목 또는 업종의 성과에 따라 투자신탁의 성과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종목 또는 업종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서 최초 목적인 투자목적과는 다르게 급격한 가격변동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원본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일반 주식형 투자신탁보다 더 높은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목적이 되는 주제의 개념 변화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로 친환경 및 디지털 관련 기업 등 뉴딜이라는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제에 해당하는 업종은 시황 및 경우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일부 종목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매출이 이 주제와 관련이 없지만 해당 업종 내에서는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선정되거나 기타의 기준에 따라 선별되는 종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투자대상의 종목결정 및 투자판단은 기본적으로 시장상황 및 해당업종의 발전 정도 등에 따라 운용역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투자자의 개별적인 의견과는 다르게 투자될 수 있고 상당한 연관성이 없는 종목도 투자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비교지수 부재 위험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주로 친환경 및 디지털 관련 기업 등 뉴딜이라는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특정지수를 투자자의 기대수익률 판단 기준으로 제공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투자신탁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주식형 투자신탁보다 더 높은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고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 판단 시 관련 사항을 한층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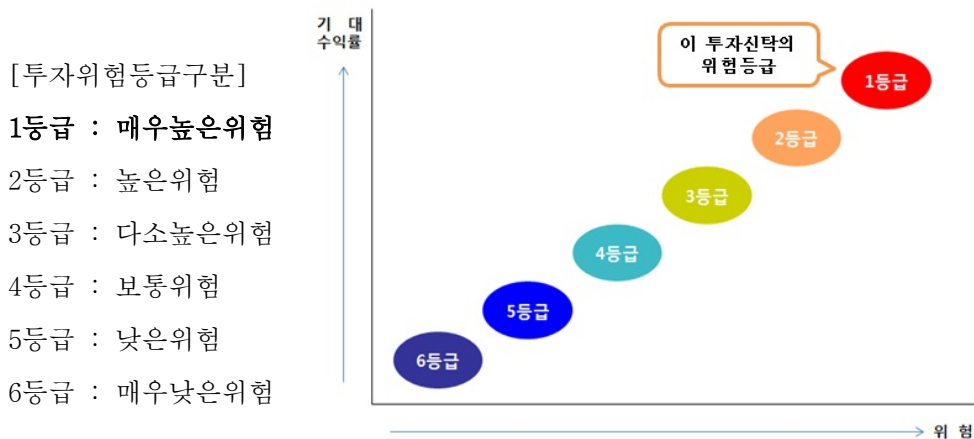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유동성 위험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라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 “제2부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신탁 해지 위험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최초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 또는 해산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소규모의 위험	투자신탁의 설정금액이 소액이거나, 환매 등에 의해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분산투자 등 원활한 펀드 운용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의 대여 또는 차입거래 위험	증권의 대여 또는 차입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미래 세상의 변화에 대비하는 전략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예상되고, 변화를 선도하며 진입 장벽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 소수 집중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주1)}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이하 '97.5% VaR')을 감안하여 투자위험 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추후 매 결산 시마다 97.5% VaR을 다시 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6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투자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동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시장위험등급 기준표>

등급	1등급 (고위험)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저위험)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 주1)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에 해당하는 손실률(신뢰구간 97.5%)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하여 등급 기준표상의 상한치를 비교합니다.
(종류형 집합투자자기구인 경우 해당 운용펀드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
- 주2)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97.5% VaR는 **81.55%** 입니다.
- 주3) 이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4) 상기 분류기준 이외에 투자전략,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외화표시집합투자자기구, 레버리지/인버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및 환변동성 노출여부에 따라 위험등급을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도 가능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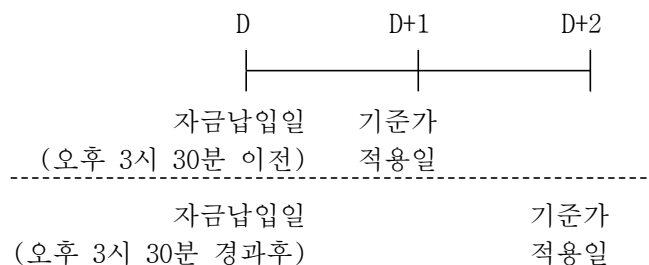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클래스 명칭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온라인(Ae)	온라인(On-Line) 판매 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자로부터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요청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 없이 본 집합투자증권의 매입하는 투자자 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가입제한이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온라인(On-line) 판매전용 수익증권으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자로부터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요청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 없이 본 집합투자증권의 매입하는 투자자 전용으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법에 의한 집합투자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30억원 이상 매입한 수익자 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Wrap Account, 특정금전신탁, 보험업법 상의 특별계정 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

클래스 명칭	가입자격
	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매수 청약할 수 있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투자권유 및 상담 서비스 없이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 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투자권유 및 상담 서비스 없이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클래스(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퇴직연금))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투자권유 및 상담 서비스 없이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전용 수익증권(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 설립되는 경우는 제외)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2)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3)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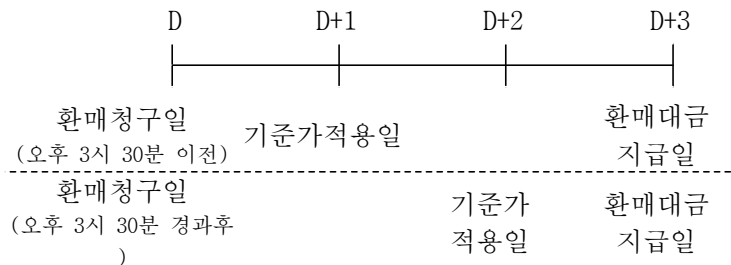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판매회사에서 이 투자신탁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도 환매가 가능합니다 .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 오후 3시 30분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2) 오후 3시 30분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 3)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환매수수료	비고(지급시기)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없음	환매시
수수료선취-온라인(Ae)	없음	환매시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 비용(Ag)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 저비용(Cg)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Ci)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 금(C-P)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 금(Cp(퇴직연금))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e(퇴직연금))	없음	환매시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 연금(S-P)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 연금(S-P(퇴직연금))	없음	환매시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오후 3시 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 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법 시행령 제257조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1)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청받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1) 내지 3)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환매연기에 따른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9) 환매 가능 여부 및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중도환매를 허용하는 투자신탁입니다

수익증권의 중도환매 및 수수료 부과에 따른 3단계 구분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가능
X	X	0

다.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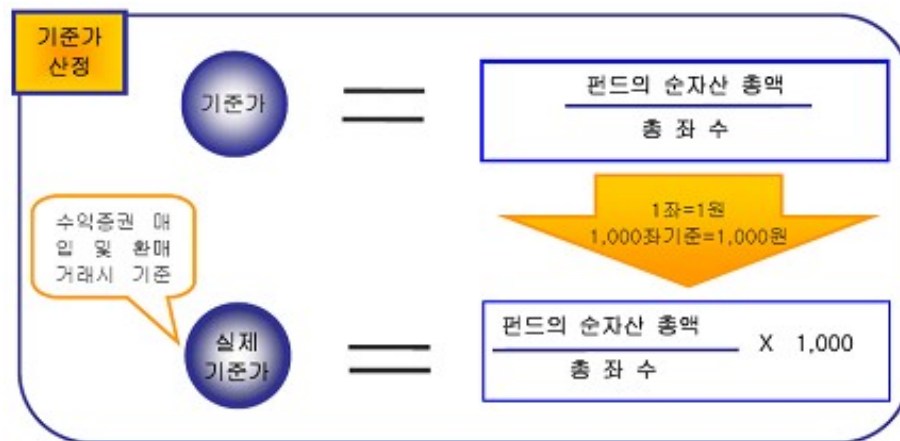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산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 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 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합니다.
종류간 기준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samsungactive.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상장수익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 1) 구성 : 대표이사(위원장), CIO, 운용본부장, 리서치센터장, 준법감시인 및 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 2) 업무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결함
 -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유지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재산 평가와 관련된 채권평가기관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채권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 부도채권등 부실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 미수금 채권 및 미지급금 채무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계약 등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계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보수 및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클래스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제한없음	납입금액의 1.0% 이내	-	없음	-
수수료선취-온라인(Ae)	선취징구 온라인 용	납입금액의 0.5% 이내	-	없음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 비용(Ag)	투자자문을 받거나 투자권유 없이 수익증권을 매수 하는 고객 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 가 징구되는 수 익증권	납입금액의 0.65% 이내	-	없음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제한없음	-	-	없음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온라인용	-	-	없음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 저비용(Cg)	투자자문을 받거나 투자권유 없이 수익증권을 매수 하는 고객 전용 수익증권	-	-	없음	-

클래스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집합투자기구 등	-	-	없음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Ci)	30억 이상 가입자	-	-	없음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Wrap 계좌전용 등	-	-	없음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 금(C-P)	연금저축 전용	-	-	없음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연금저축 온라인 용	-	-	없음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 금(Cp(퇴직연금))	퇴직연금 전용	-	-	없음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e(퇴직연금))	퇴직연금 온라인 용	-	-	없음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온라인 판매시스 템에 회원으로 가 입한 투자자 전용	-	3년 미만 환 매시 환매금 액의 0.15%이 내	없음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 연금(S-P)	온라인 판매시스 템 통해 매수하는 투자자 전용(연금 저축 전용)	-	-	없음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 연금(S-P(퇴직연금))	온라인 판매시스 템 통해 매수하는 투자자 전용(퇴직 연금 전용)	-	-	없음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주 선취, 후취 판매 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별로 차등
1)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2)종류별 가입자격
2) 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투자신탁 관련 보수등

클래스종류	지급비율(연간,%)									
	집합투자 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총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 비용	동종유형 총 보수	총 보수 · 비용(피 투자 집합 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 거래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0.60	0.56	0.02	0.02	1.20	0.003	1.203	1.33	1.203	0.8705

수수료선취-온라인(Ae)	0.60	0.28	0.02	0.02	0.92	0.0031	0.9231	0.98	0.9231	0.8787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0.60	0.37	0.02	0.02	1.01	실비	1.01	-	1.01	실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0.60	0.90	0.02	0.02	1.54	0.0031	1.5431	1.6	1.5431	0.8786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0.60	0.45	0.02	0.02	1.09	0.0031	1.0931	1.03	1.0931	0.87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0.60	0.60	0.02	0.02	1.24	실비	1.24	-	1.24	실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0.60	0.03	0.02	0.02	0.67	0.0014	0.6714	-	0.6714	0.48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0.60	0.20	0.02	0.02	0.84	실비	0.84	-	0.84	실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0.60	0.00	0.02	0.02	0.64	0.0028	0.6428	-	0.6428	0.680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0.60	0.54	0.02	0.02	1.18	0.0028	1.1828	-	1.1828	0.8773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0.60	0.27	0.02	0.02	0.91	0.0029	0.9129	-	0.9129	0.874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퇴직연금))	0.60	0.46	0.02	0.02	1.10	0.0028	1.1028	-	1.1028	0.88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퇴직연금))	0.60	0.23	0.02	0.02	0.87	0.003	0.873	-	0.873	0.8756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0.60	0.25	0.02	0.02	0.89	0.003	0.893	-	0.893	0.8789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0.60	0.16	0.02	0.02	0.80	0.002	0.802	-	0.802	0.8808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퇴직연금))	0.60	0.15	0.02	0.02	0.79	0.002	0.792	-	0.792	0.8799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	사유 발생시

- 주1) 총보수·비용비율은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 주2)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 예탁 및 결제비용,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지수사용료, 보관대리인 보수, 법률자문비용, 부동산감정평가보수 등
-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하였으므로 실제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클래스 포함)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3) 증권거래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 (국내자산) 상장 또는 등록주식 매매수수료, 장외파생상품 매매수수료, 장외 ELW/ELS 거래수수료, 현금 중개수수료, 대차 또는 대주, Repo 거래 중개수수료 등
 - (해외자산) 주식, 채권, 선물, 장외파생, 기타 Forward 매매수수료 등
-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을 연환산한 비율 추정치로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수치화된 비율 및 금액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한 증권거래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발생 내역, 천원)
증권거래비용	299,363

주4) 금융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금융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산이 가능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신탁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금액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한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발생 내역, 천원)
금융비용	-

※ 회계기간 중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회계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직전 회계연도의 발생 비용을 기재할 예정입니다.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단위: 원)

클래스종류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19,100	341,402	469,819	746,237	1,567,67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19,100	341,402	469,819	746,237	1,567,671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41,844	236,156	335,184	548,343	1,181,78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1,844	236,156	335,184	548,343	1,181,787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제 비용(A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65,343	268,384	376,577	609,463	1,301,53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65,343	268,384	376,577	609,463	1,301,530

클래스종류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54,307	312,761	479,138	837,265	1,901,51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4,307	312,761	479,138	837,265	1,901,515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09,305	221,549	339,405	593,090	1,346,96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9,305	221,549	339,405	593,090	1,346,96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24,000	251,333	385,033	672,822	1,528,04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4,000	251,333	385,033	672,822	1,528,04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67,139	136,084	208,475	364,298	827,35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67,139	136,084	208,475	364,298	827,35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객(C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84,000	170,258	260,829	455,783	1,035,13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4,000	170,258	260,829	455,783	1,035,13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64,283	130,293	199,604	348,796	792,15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64,283	130,293	199,604	348,796	792,15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18,280	239,739	367,272	641,785	1,457,56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8,280	239,739	367,272	641,785	1,457,560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91,293	185,040	283,475	495,356	1,125,004

클래스종류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1,293	185,040	283,475	495,356	1,125,00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10,279	223,522	342,427	598,371	1,358,96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0,279	223,522	342,427	598,371	1,358,963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87,300	176,947	271,076	473,689	1,075,79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7,300	176,947	271,076	473,689	1,075,796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04,168	195,732	291,875	498,823	1,113,81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4,168	195,732	291,875	498,823	1,113,811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80,199	162,554	249,027	435,159	988,29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0,199	162,554	249,027	435,159	988,291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79,198	160,524	245,917	429,726	975,95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9,198	160,524	245,917	429,726	975,951

- 주)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 (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되, 기타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이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6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클래스는 해당 후취판매수수료를 반영한 값으로 3년 이상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은 감소합니다.

(2) 투자신탁 관련 비용

- 1)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 2) 증권 등의 전자등록 및 결제비용
-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집합투자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송인 경우 제외)
-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비용
-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 보수 및 지급내역에 관한 사항

다음 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 제1항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수취하는 투자신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기준지표	보수 산정방식	한도 (%)	산출 주기	지급시기	지급내역 (직전 회계연도 기준,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	-	-	-	-	-	-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분배

-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零"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펀드내 자산의 평가·매매차익의 결산·분배금 유보로 인해 과세가 자동이월되면서, 환매 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익자는 (1)에 의하여 분배되는 이익금을 금전 등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3)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 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4)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 다음의 투자신탁 또는 수익자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안내는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이며, 향후 세법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1)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2)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투자신탁 단계에서 별도의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 3)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1)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이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2)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3)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 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내(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1. 연간 1,800만원 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수령 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 공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 1.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이하)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 (지방소득세 포함)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 전환 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 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 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 기준 한도로 작성되었습니다.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지방소득세 포함, 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 아래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 적용 1. 연금 실제 수령 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 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2. 연금 실제 수령 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
연금소득 분리과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 1.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2.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3. 1호 및 2호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단, 연간 1,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가능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연금외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 금외 수령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시 -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 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 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4)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① 세액공제: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최대 600만원 이내의 금액)하여 연간 900만원 한도까지 13.2%(또는 16.5%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 공제
단,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 기준 한도로 작성되었습니다.
-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
-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연금인출, 연금외인출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게 결정

-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중도 해지시 적용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연금 세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https://100lifeplan.fss.or.kr>)의 '연금세제안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 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아래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회계법인 : 대주회계법인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재무상태표			
항목	6기 (2026. 9. 13)	5기 (2025. 9. 13)	4기 (2024. 9. 13)
자산총계	39,053	27,639	26,293
운용자산	30,578	25,846	25,831
증권	30,280	25,720	25,159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298	126	672
기타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8,476	1,792	462
부채총계	7,710	1,039	285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7,710	1,039	285
자본총계	31,344	26,600	26,008
원본	13,441	19,050	24,331
수익조정금	-5,016	-1,407	-1,678
이익잉여금	22,919	8,957	3,355
매매회전율	446.19	433.37	143.58

(단위 : 백만원)

손익계산서			
항목	6기 (2025. 9. 14~2026. 9. 13)	5기 (2024. 9. 14~2025. 9. 13)	4기 (2023. 9. 14~2024. 9. 13)
운용수익	15,731	7,559	1,076
이자수익	27	29	18
배당수익	316	456	388
매매/평가차익(손)	15,388	7,074	670

항목	6기 (2025. 9.14~2026. 9.13)	5기 (2024. 9.14~2025. 9.13)	4기 (2023. 9.14~2024. 9.13)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353	279	355
관련회사 보수	352	278	354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1	1	1
당기순이익	15,378	7,281	721
매매회전율	446.19	433.37	143.58

주1)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예시로 1회계연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 입니다.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 백만원, 주,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 (B)	매매회전율 (A/B)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2,911,992	136,251	2,794,221	147,658	33,093	446.19	32.41

* 동종유형이란 상장지수집합기구 및 일반 공모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자본시장법 제229조에 따른 5가지 종류의 유형(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제외)을 의미하며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의 전체의 평균 매매회전율을 의미합니다.

* 해당 투자신탁이 자투자신탁인 경우에는 투자대상인 모투자신탁의 매매회전율에 대한 내용이며, 자투자신탁에서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비율을 안분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주2) 증권의 대여/차입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6기 (2025. 9.14~2026. 9.13)	5기 (2024. 9.14~2025. 9.13)	4기 (2023. 9.14~2024. 9.13)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는 수수료 수익 등 포함	0	0	0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는 수수료 비용 등 포함	0	0	0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 백만원, %)

구분	당기 (2025. 9.14~2026. 9.13)			전기 (2024. 9.14~2025. 9.13)		
	거래금액(A)	거래비용		거래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 (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 (B/A)
주식	283,909	299	0.11	212,728	235	0.11
주식 이외의 증권(채권등)	0	0	0.00	0	0	0.00
부동산	0	0	0.00	0	0	0.00
장내파생상품	0	0	0.00	0	0	0.00
장외파생상품	0	0	0.00	0	0	0.00
기타	0	0	0.00	0	0	0.00
합계	283,909	299	0.11	212,728	235	0.11

* 주식 중개수수료 등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하되 장외 채권거래, 장외파생상품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렵거나 부동산 등과 같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수익적지출 등 비용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기재)은 작성 생략 가능합니다.

* 해당 투자신탁이 자투자신탁인 경우에는 투자대상인 모투자신탁의 거래비용에 대한 내용이며, 자투자신탁에서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비율을 안분하여 기재하였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 : 억좌, 억원)

클래스종류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25.9.14 ~2026.9.13	36	36	7	7	27	27	0	0
	2024.9.14 ~2025.9.13	50	50	1	1	15	15	0	0
	2023.9.14 ~2024.9.13	74	74	8	8	32	32	50	50
	2022.9.14 ~2023.9.13	76	76	15	15	17	17	74	74
수수료선취-온라인(Ae)	2025.9.14 ~2026.9.13	32	32	13	13	17	17	0	0
	2024.9.14 ~2025.9.13	46	46	8	8	21	21	0	0

수수료선회-온라인(Ae)	2023.9.14 ~2024.9.13	69	69	7	7	31	31	46	46
	2022.9.14 ~2023.9.13	75	75	11	11	17	17	69	6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2025.9.14 ~2026.9.13	13	13	3	3	7	7	0	0
	2024.9.14 ~2025.9.13	15	15	2	2	3	3	0	0
	2023.9.14 ~2024.9.13	20	20	2	2	7	7	15	15
	2022.9.14 ~2023.9.13	23	23	3	3	6	6	20	20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2025.9.14 ~2026.9.13	44	44	13	13	27	27	0	0
	2024.9.14 ~2025.9.13	63	63	9	9	28	28	0	0
	2023.9.14 ~2024.9.13	94	94	13	13	44	44	63	63
	2022.9.14 ~2023.9.13	101	101	13	13	21	21	94	9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2025.9.14 ~2026.9.13	2	2	0	0	2	2	0	0
	2024.9.14 ~2025.9.13	2	2	0	0	0	0	0	0
	2023.9.14 ~2024.9.13	2	2	0	0	0	0	2	2
	2022.9.14 ~2023.9.13	52	52	0	0	50	50	2	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2025.9.14 ~2026.9.13	0	0	8	8	8	8	0	0
	2024.9.14 ~2025.9.13	0	0	0	0	0	0	0	0
	2023.9.14 ~2024.9.13	0	0	0	0	0	0	0	0
	2022.9.14 ~2023.9.13	0	0	0	0	0	0	0	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	2025.9.14 ~2026.9.13	2	2	0	0	1	1	0	0
	2024.9.14 ~2025.9.13	3	3	0	0	1	1	0	0
	2023.9.14 ~2024.9.13	3	3	0	0	1	1	3	3
	2022.9.14 ~2023.9.13	4	4	0	0	1	1	3	3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2025.9.14 ~2026.9.13	12	12	4	4	7	7	0	0
	2024.9.14 ~2025.9.13	15	15	5	5	8	8	0	0
	2023.9.14 ~2024.9.13	17	17	5	5	8	8	15	15
	2022.9.14 ~2023.9.13	18	18	3	3	3	3	17	1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퇴직연금))	2025.9.14 ~2026.9.13	4	4	0	0	0	0	0	0
	2024.9.14 ~2025.9.13	5	5	0	0	1	1	0	0
	2023.9.14 ~2024.9.13	9	9	0	0	5	5	5	5
	2022.9.14 ~2023.9.13	9	9	0	0	0	0	9	9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e(퇴직연금))	2025.9.14 ~2026.9.13	28	28	16	16	20	20	0	0
	2024.9.14 ~2025.9.13	29	29	21	21	21	21	0	0
	2023.9.14 ~2024.9.13	36	36	13	13	20	20	29	29
	2022.9.14 ~2023.9.13	40	40	5	5	9	9	36	36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2025.9.14 ~2026.9.13	14	14	2	2	5	5	0	0
	2024.9.14 ~2025.9.13	15	15	2	2	3	3	0	0
	2023.9.14 ~2024.9.13	22	22	2	2	9	9	15	15
	2022.9.14 ~2023.9.13	25	25	3	3	6	6	22	2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2025.9.14 ~2026.9.13	1	1	0	0	0	0	0	0
	2024.9.14 ~2025.9.13	2	2	0	0	1	1	0	0
	2023.9.14 ~2024.9.13	2	2	0	0	1	1	2	2
	2022.9.14 ~2023.9.13	3	3	1	1	1	1	2	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퇴직연금))	2025.9.14 ~2026.9.13	0	0	0	0	0	0	0	0
	2024.9.14 ~2025.9.13	0	0	0	0	0	0	0	0
	2023.9.14 ~2024.9.13	0	0	0	0	0	0	0	0
	2022.9.14 ~2023.9.13	1	1	0	0	0	0	0	0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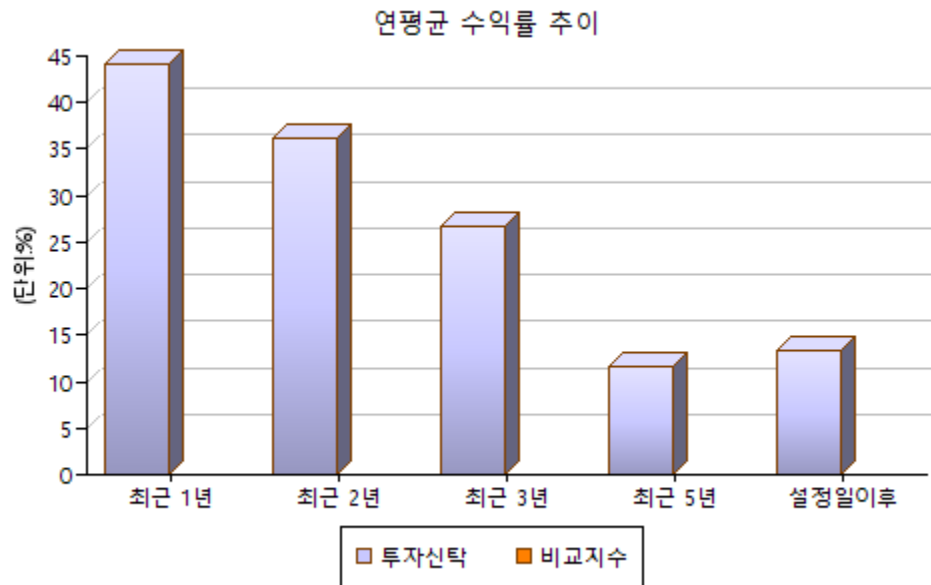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수익률

(1) 삼성뉴딜코리아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연도	최근 1년 (25.10.15 ~26.10.14)	최근 2년 (24.10.15 ~26.10.14)	최근 3년 (23.10.15 ~26.10.14)	최근 5년 (21.10.15 ~26.10.14)	설정일 이후 (20.09.14 ~26.10.14)
투자신탁	44.16 %	36.07 %	26.70 %	11.59 %	13.36 %
비교지수					
수익률변동성	54.36 %	41.43 %	35.95 %	30.50 %	28.9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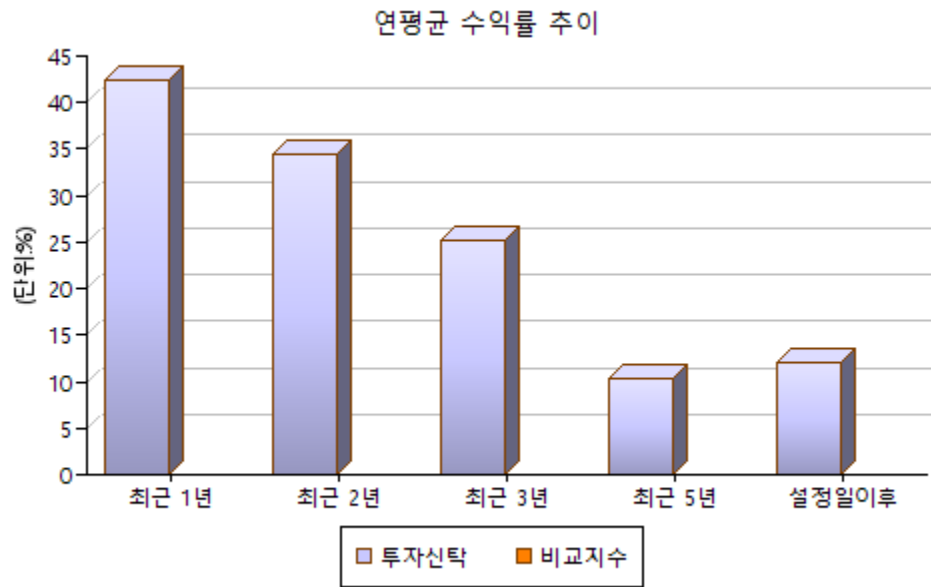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입니다.



(2) 삼성뉴딜코리아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_A(수수료선취-오프라인)

연도	최근 1년 (25.10.15 ~26.10.14)	최근 2년 (24.10.15 ~26.10.14)	최근 3년 (23.10.15 ~26.10.14)	최근 5년 (21.10.15 ~26.10.14)	설정일 이후 (20.09.14 ~26.10.14)
투자신탁	42.52 %	34.51 %	25.23 %	10.28 %	12.02 %
비교지수					
수익률변동성	54.36 %	41.43 %	35.95 %	30.50 %	28.9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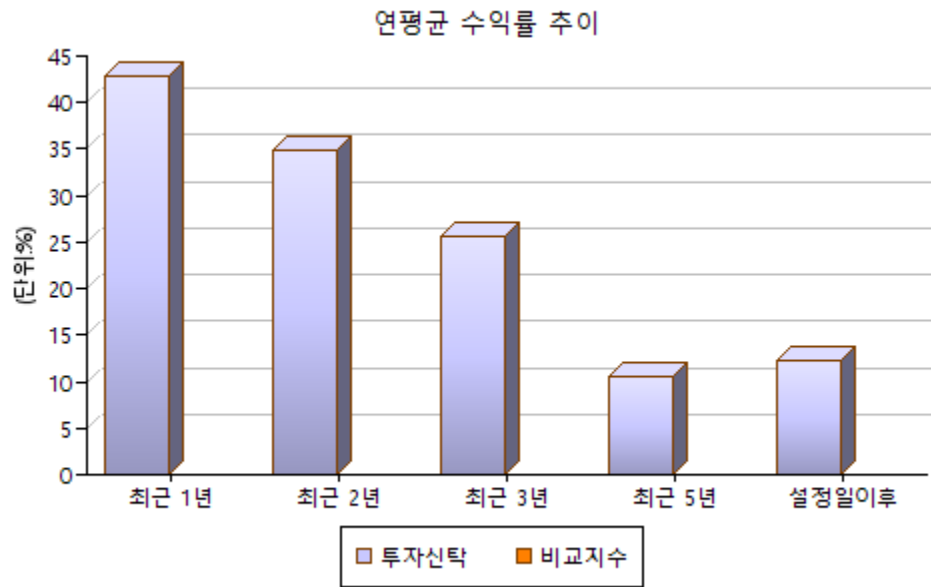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입니다.



(3) 삼성뉴딜코리아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_Ae(수수료선택-온라인)

연도	최근 1년 (25.10.15 ~26.10.14)	최근 2년 (24.10.15 ~26.10.14)	최근 3년 (23.10.15 ~26.10.14)	최근 5년 (21.10.15 ~26.10.14)	설정일 이후 (20.09.14 ~26.10.14)
투자신탁	42.90 %	34.87 %	25.57 %	10.58 %	12.33 %
비교지수					
수익률변동성	54.36 %	41.43 %	35.95 %	30.50 %	28.91 %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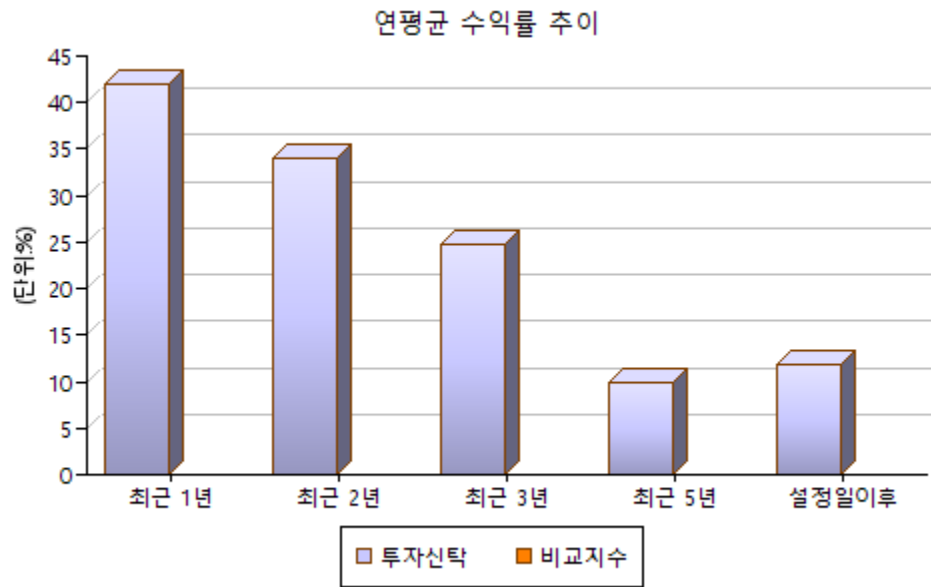
(4) 삼성뉴딜코리아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_Ag(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 해당사항 없음

(5) 삼성뉴딜코리아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_C(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연도	최근 1년 (25.10.15 ~26.10.14)	최근 2년 (24.10.15 ~26.10.14)	최근 3년 (23.10.15 ~26.10.14)	최근 5년 (21.10.15 ~26.10.14)	설정일 이후 (20.09.17 ~26.10.14)
투자신탁	42.06 %	34.07 %	24.81 %	9.91 %	11.84 %
비교지수					
수익률변동성	54.36 %	41.43 %	35.95 %	30.50 %	28.9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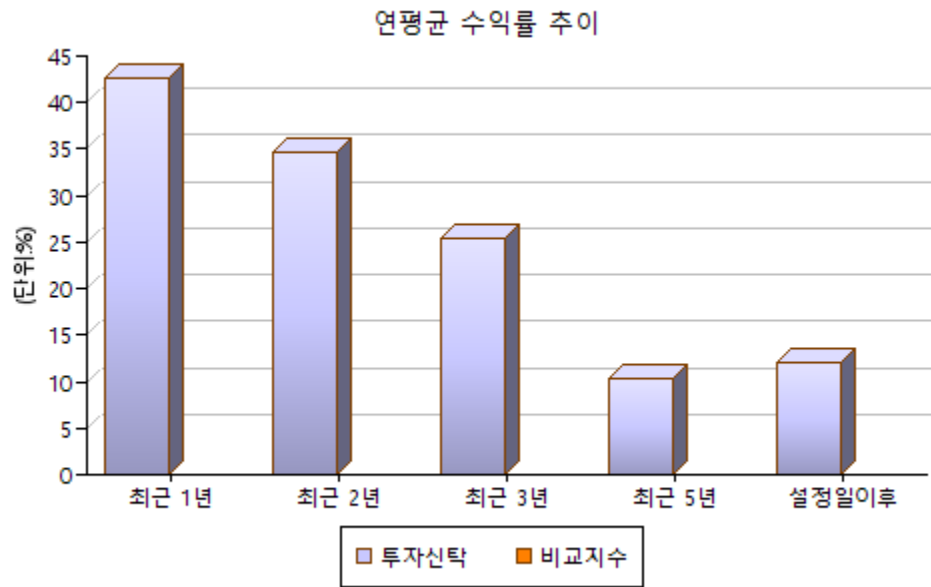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입니다.



(6) 삼성뉴딜코리아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_Ce(수수료미징구-온라인)

연도	최근 1년 (25.10.15 ~26.10.14)	최근 2년 (24.10.15 ~26.10.14)	최근 3년 (23.10.15 ~26.10.14)	최근 5년 (21.10.15 ~26.10.14)	설정일 이후 (20.09.16 ~26.10.14)
투자신탁	42.67 %	34.65 %	25.36 %	10.39 %	12.12 %
비교지수					
수익률변동성	54.36 %	41.43 %	35.95 %	30.50 %	28.91 %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입니다.



(7) 삼성뉴딜코리아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_Cg(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 해당사항 없음

(8) 삼성뉴딜코리아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_Cf(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 해당사항 없음

(9) 삼성뉴딜코리아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_Ci(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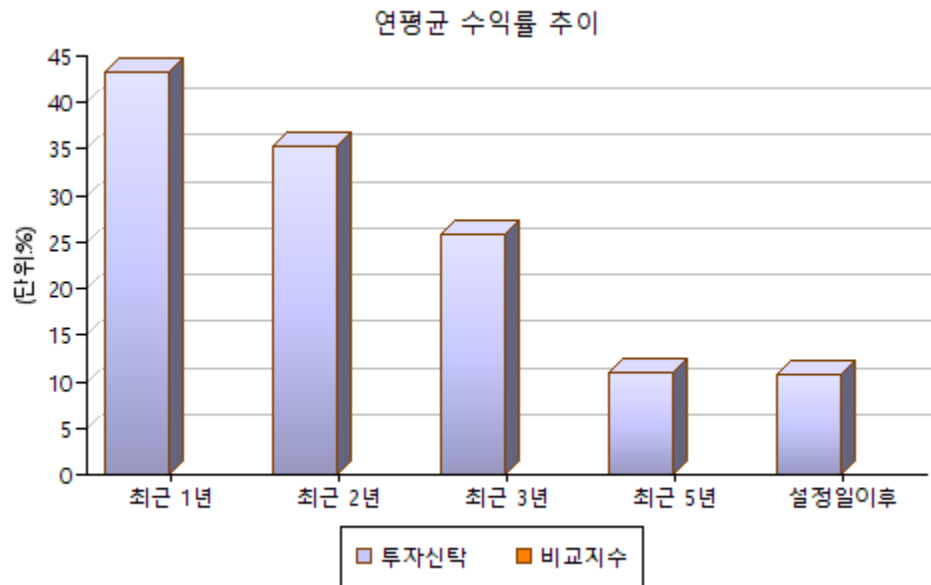
- 해당사항 없음

(10) 삼성뉴딜코리아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_Cw(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연도	최근 1년 (25.10.15 ~26.10.14)	최근 2년 (24.10.15 ~26.10.14)	최근 3년 (23.10.15 ~26.10.14)	최근 5년 (21.10.15 ~26.10.14)	설정일 이후 (21.01.22 ~26.10.14)
투자신탁	43.27 %	35.23 %	25.91 %	10.89 %	10.68 %
비교지수					
수익률변동성	54.36 %	41.43 %	35.95 %	30.50 %	28.91 %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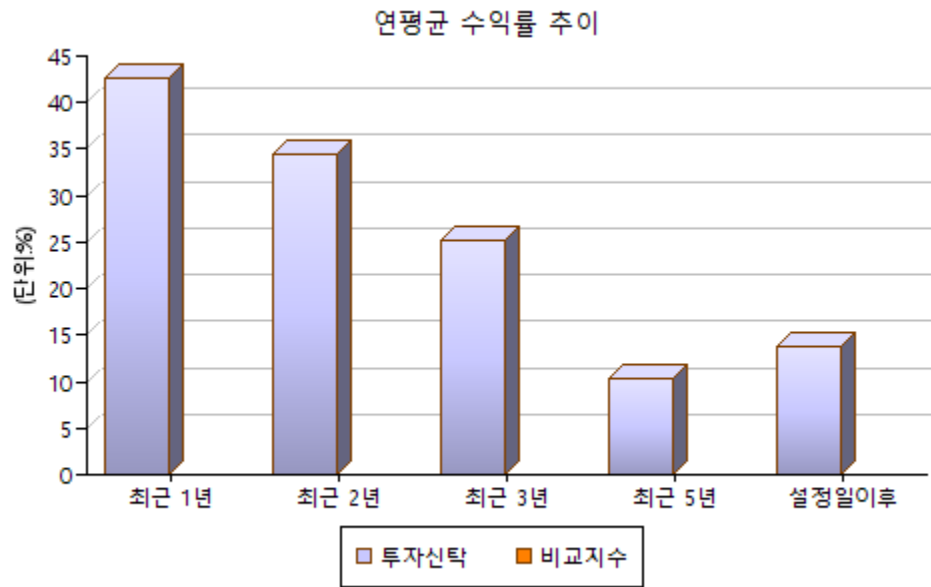
-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입니다.



(11) 삼성뉴딜코리아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_C-P(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연도	최근 1년 (25.10.15 ~26.10.14)	최근 2년 (24.10.15 ~26.10.14)	최근 3년 (23.10.15 ~26.10.14)	최근 5년 (21.10.15 ~26.10.14)	설정일 이후 (20.11.12 ~26.10.14)
투자신탁	42.55 %	34.54 %	25.25 %	10.30 %	13.85 %
비교지수					
수익률변동성	54.36 %	41.43 %	35.95 %	30.50 %	28.9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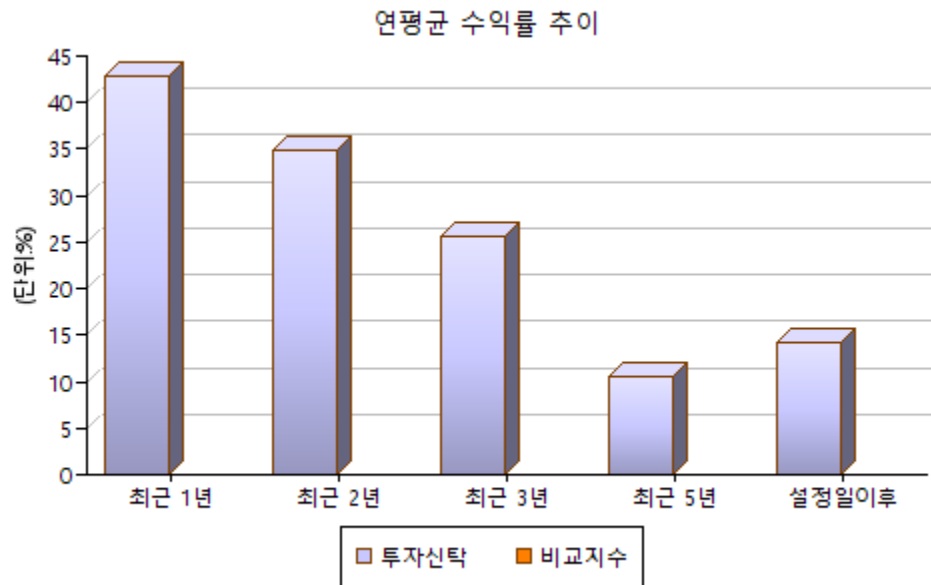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입니다.



(12) 삼성뉴딜코리아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_C-Pe(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연도	최근 1년 (25.10.15 ~26.10.14)	최근 2년 (24.10.15 ~26.10.14)	최근 3년 (23.10.15 ~26.10.14)	최근 5년 (21.10.15 ~26.10.14)	설정일 이후 (20.11.18 ~26.10.14)
투자신탁	42.91 %	34.88 %	25.58 %	10.59 %	14.12 %
비교지수					
수익률변동성	54.36 %	41.43 %	35.95 %	30.50 %	28.9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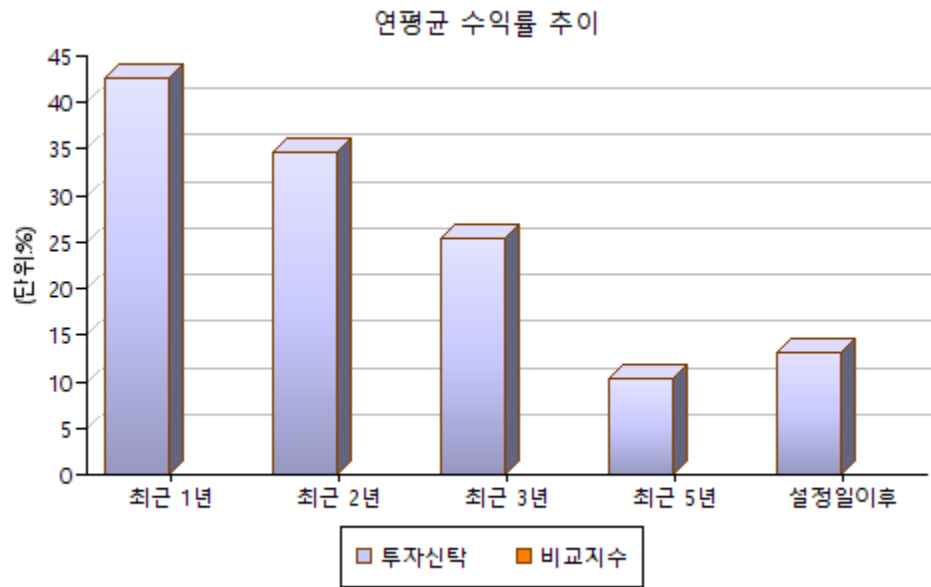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입니다.



(13) 삼성뉴딜코리아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_Cp(퇴직연금)(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연도	최근 1년 (25.10.15 ~26.10.14)	최근 2년 (24.10.15 ~26.10.14)	최근 3년 (23.10.15 ~26.10.14)	최근 5년 (21.10.15 ~26.10.14)	설정일 이후 (20.12.15 ~26.10.14)
투자신탁	42.66 %	34.64 %	25.35 %	10.38 %	13.18 %
비교지수					
수익률변동성	54.36 %	41.43 %	35.95 %	30.50 %	28.9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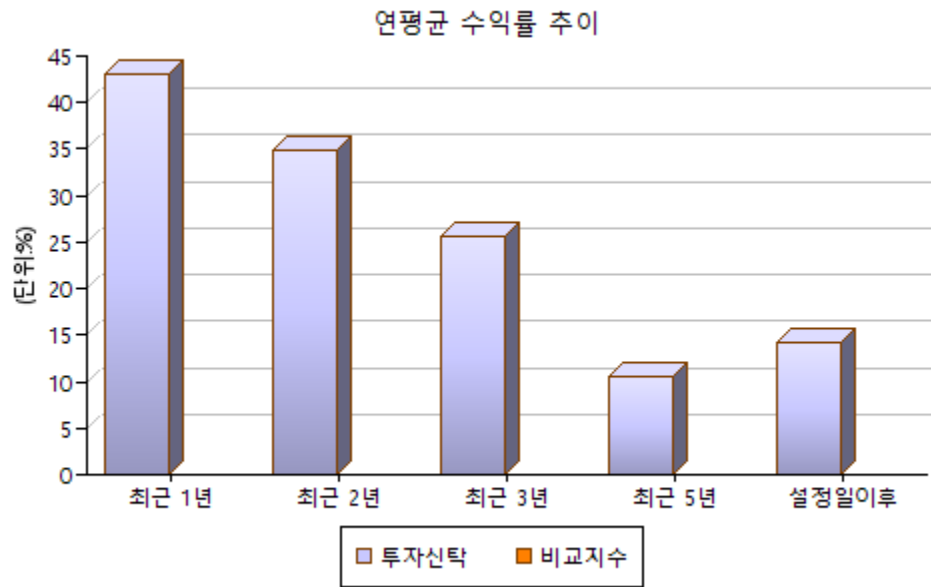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입니다.



(14) 삼성뉴딜코리아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_Cpe(퇴직연금)(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연도	최근 1년 (25.10.15 ~26.10.14)	최근 2년 (24.10.15 ~26.10.14)	최근 3년 (23.10.15 ~26.10.14)	최근 5년 (21.10.15 ~26.10.14)	설정일 이후 (20.11.13 ~26.10.14)
투자신탁	42.96 %	34.93 %	25.63 %	10.63 %	14.23 %
비교지수					
수익률변동성	54.36 %	41.43 %	35.95 %	30.50 %	28.9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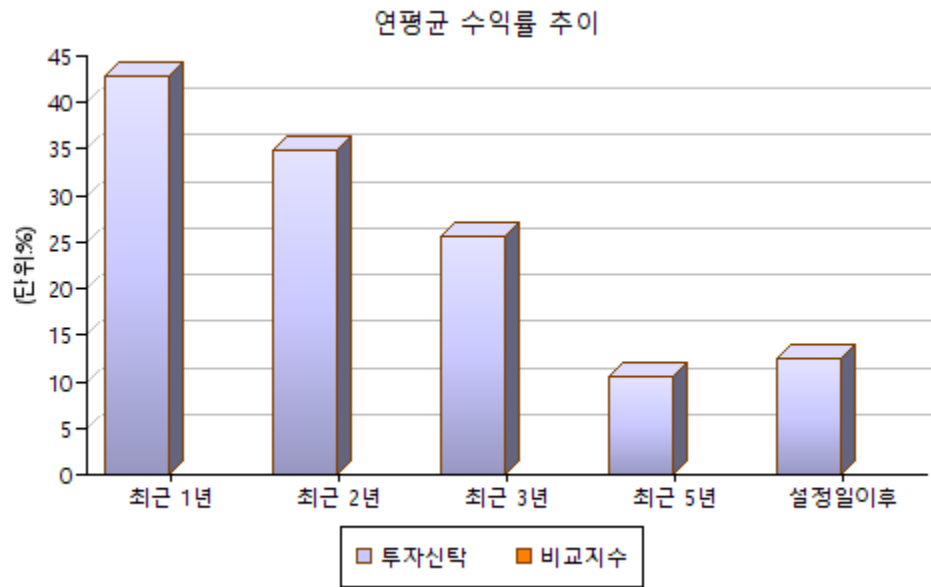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입니다.



(15) 삼성뉴딜코리아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_S(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연도	최근 1년 (25.10.15 ~26.10.14)	최근 2년 (24.10.15 ~26.10.14)	최근 3년 (23.10.15 ~26.10.14)	최근 5년 (21.10.15 ~26.10.14)	설정일 이후 (20.09.17 ~26.10.14)
투자신탁	42.94 %	34.91 %	25.60 %	10.61 %	12.56 %
비교지수					
수익률변동성	54.36 %	41.43 %	35.95 %	30.50 %	28.9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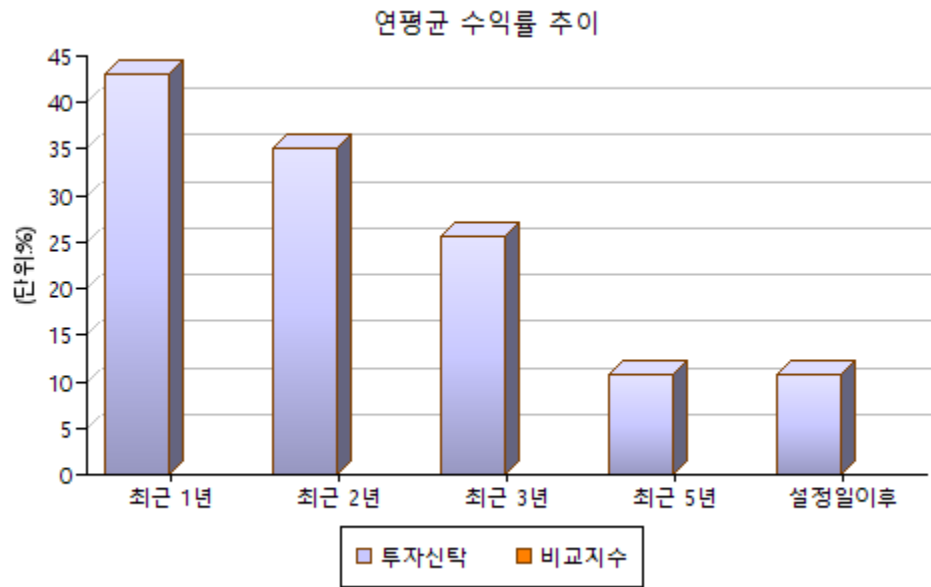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입니다.



(16) 삼성뉴딜코리아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_S-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연도	최근 1년 (25.10.15 ~26.10.14)	최근 2년 (24.10.15 ~26.10.14)	최근 3년 (23.10.15 ~26.10.14)	최근 5년 (21.10.15 ~26.10.14)	설정일 이후 (21.02.04 ~26.10.14)
투자신탁	43.06 %	35.03 %	25.72 %	10.71 %	10.85 %
비교지수					
수익률변동성	54.36 %	41.43 %	35.95 %	30.50 %	28.9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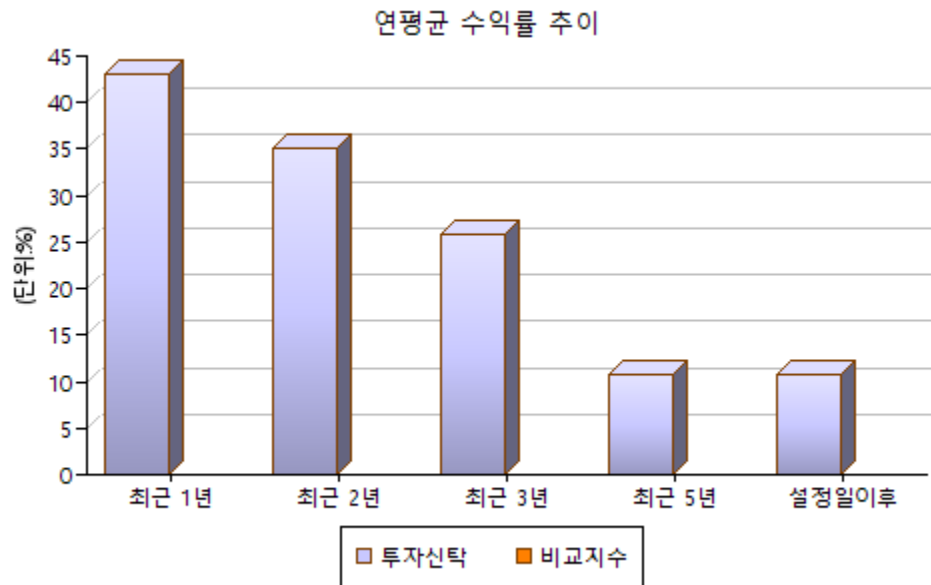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입니다.



(17) 삼성뉴딜코리아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_S-P(퇴직연금)(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연도	최근 1년 (25.10.15 ~26.10.14)	최근 2년 (24.10.15 ~26.10.14)	최근 3년 (23.10.15 ~26.10.14)	최근 5년 (21.10.15 ~26.10.14)	설정일 이후 (21.08.24 ~26.10.14)
투자신탁	43.08 %	35.04 %	25.73 %	10.73 %	10.68 %
비교지수					
수익률변동성	54.36 %	41.43 %	35.95 %	30.50 %	28.91 %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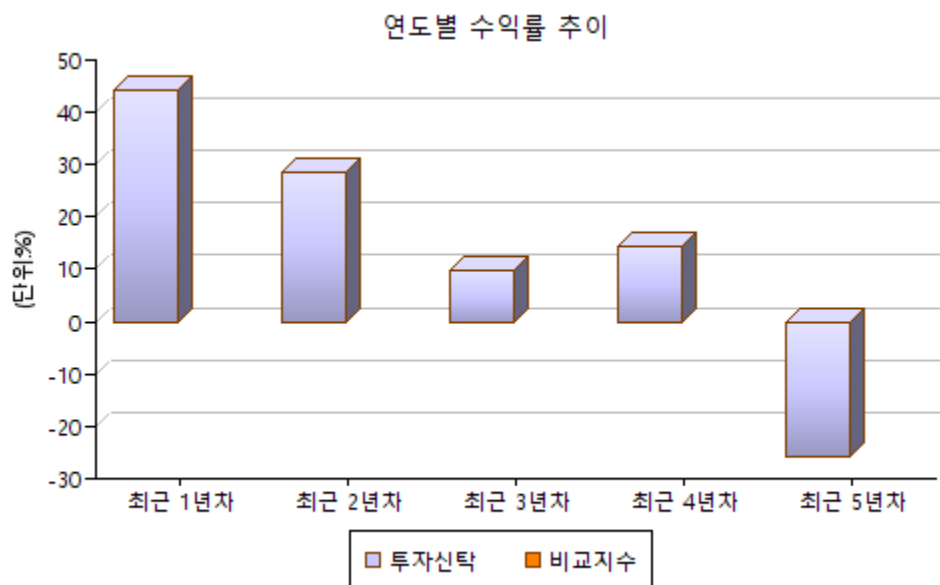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1) 삼성뉴딜코리아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연도	최근 1년차 (25.10.15 ~26.10.14)	최근 2년차 (24.10.15 ~25.10.14)	최근 3년차 (23.10.15 ~24.10.14)	최근 4년차 (22.10.15 ~23.10.14)	최근 5년차 (21.10.15 ~22.10.14)
투자신탁	44.16 %	28.43 %	9.93 %	14.46 %	-25.70 %
비교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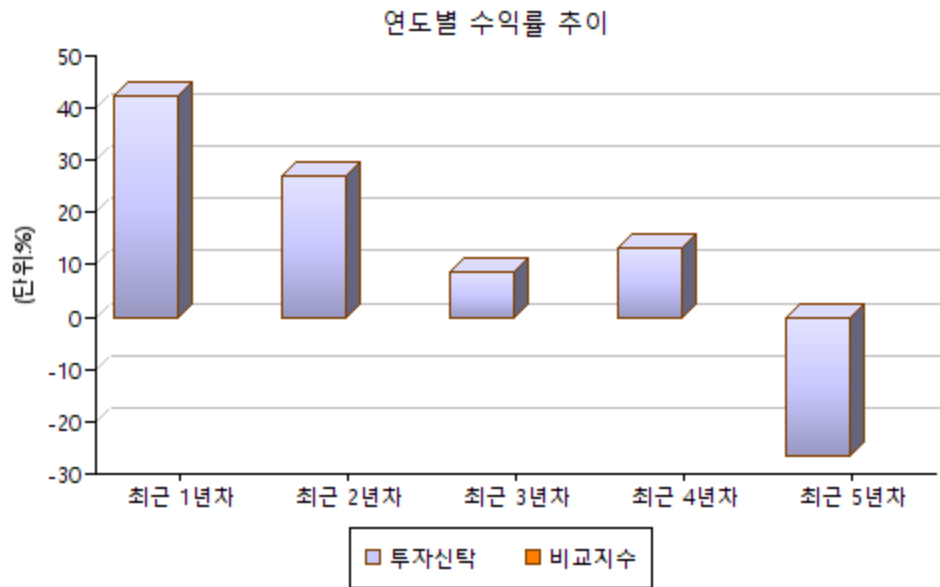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삼성뉴딜코리아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_A(수수료선취-오프라인)

연도	최근 1년차 (25.10.15 ~26.10.14)	최근 2년차 (24.10.15 ~25.10.14)	최근 3년차 (23.10.15 ~24.10.14)	최근 4년차 (22.10.15 ~23.10.14)	최근 5년차 (21.10.15 ~22.10.14)
투자신탁	42.52 %	26.95 %	8.61 %	13.11 %	-26.61 %
비교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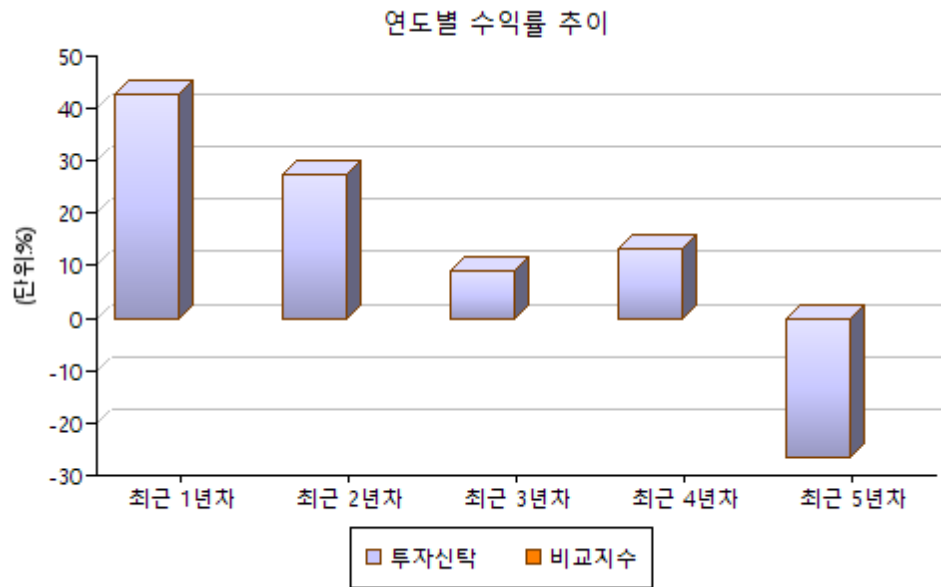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3) 삼성뉴딜코리아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_Ae(수수료선취-온라인)

연도	최근 1년차 (25.10.15 ~26.10.14)	최근 2년차 (24.10.15 ~25.10.14)	최근 3년차 (23.10.15 ~24.10.14)	최근 4년차 (22.10.15 ~23.10.14)	최근 5년차 (21.10.15 ~22.10.14)
투자신탁	42.90 %	27.29 %	8.91 %	13.42 %	-26.40 %
비교지수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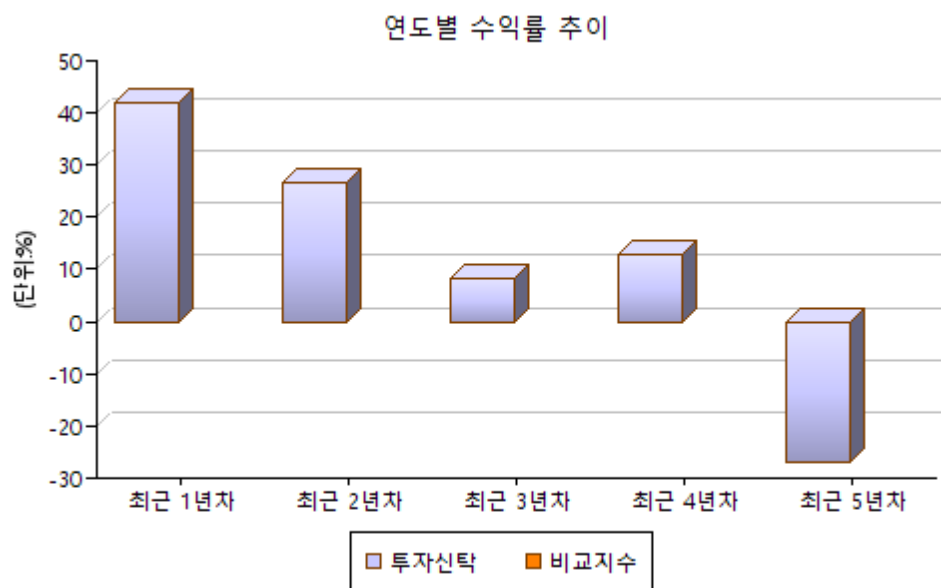
(4) 삼성뉴딜코리아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_Ag(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 해당사항 없음

(5) 삼성뉴딜코리아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_C(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연도	최근 1년차 (25.10.15 ~26.10.14)	최근 2년차 (24.10.15 ~25.10.14)	최근 3년차 (23.10.15 ~24.10.14)	최근 4년차 (22.10.15 ~23.10.14)	최근 5년차 (21.10.15 ~22.10.14)
투자신탁	42.06 %	26.53 %	8.24 %	12.74 %	-26.87 %
비교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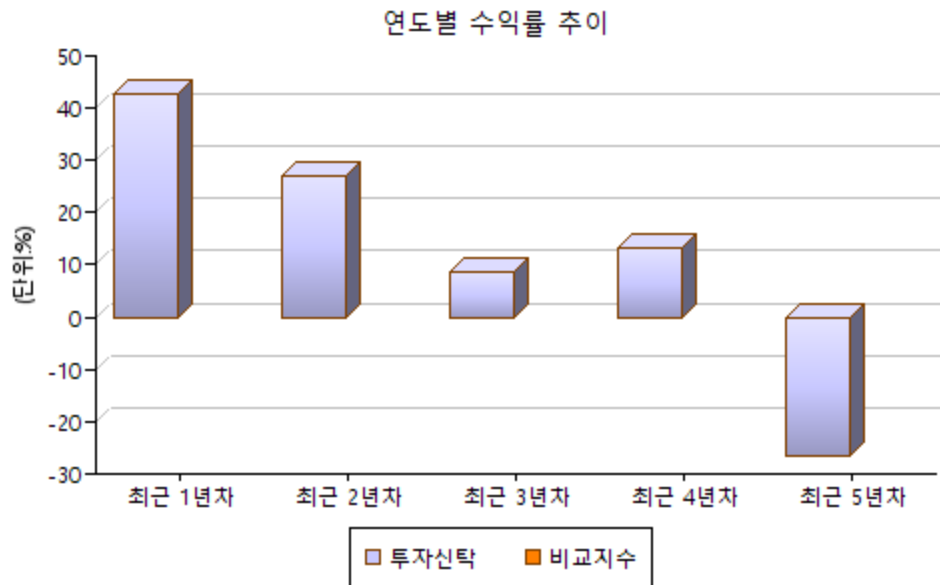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6) 삼성뉴딜코리아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_Ce(수수료미징구-온라인)

연도	최근 1년차 (25.10.15 ~26.10.14)	최근 2년차 (24.10.15 ~25.10.14)	최근 3년차 (23.10.15 ~24.10.14)	최근 4년차 (22.10.15 ~23.10.14)	최근 5년차 (21.10.15 ~22.10.14)
투자신탁	42.67 %	27.08 %	8.73 %	13.23 %	-26.53 %
비교지수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7) 삼성뉴딜코리아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_Cg(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 해당사항 없음

(8) 삼성뉴딜코리아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_Cf(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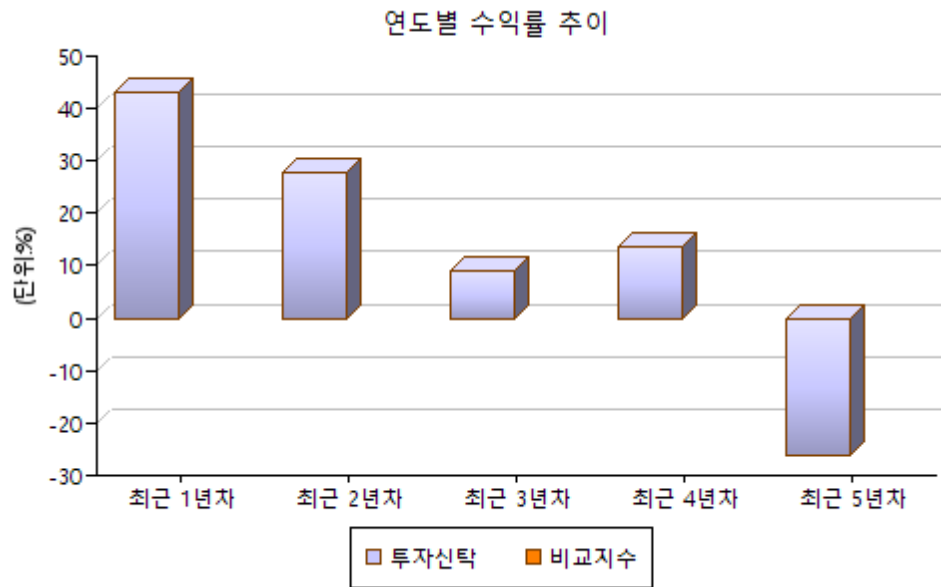
(9) 삼성뉴딜코리아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_Ci(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 해당사항 없음

(10) 삼성뉴딜코리아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_Cw(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연도	최근 1년차 (25.10.15 ~26.10.14)	최근 2년차 (24.10.15 ~25.10.14)	최근 3년차 (23.10.15 ~24.10.14)	최근 4년차 (22.10.15 ~23.10.14)	최근 5년차 (21.10.15 ~22.10.14)
투자신탁	43.27 %	27.65 %	9.23 %	13.75 %	-26.18 %
비교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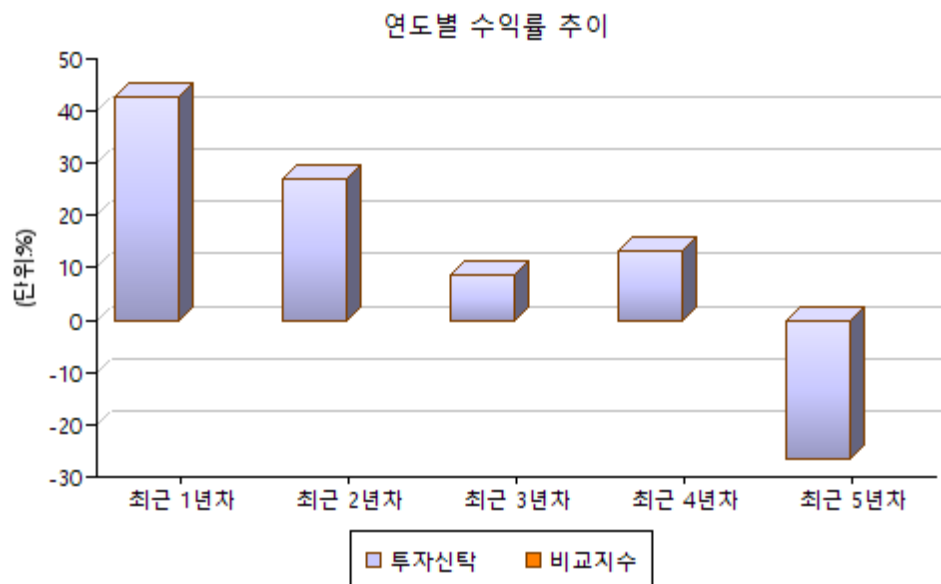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11) 삼성뉴딜코리아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_C-P(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연도	최근 1년차 (25.10.15 ~26.10.14)	최근 2년차 (24.10.15 ~25.10.14)	최근 3년차 (23.10.15 ~24.10.14)	최근 4년차 (22.10.15 ~23.10.14)	최근 5년차 (21.10.15 ~22.10.14)
투자신탁	42.55 %	26.97 %	8.63 %	13.14 %	-26.59 %
비교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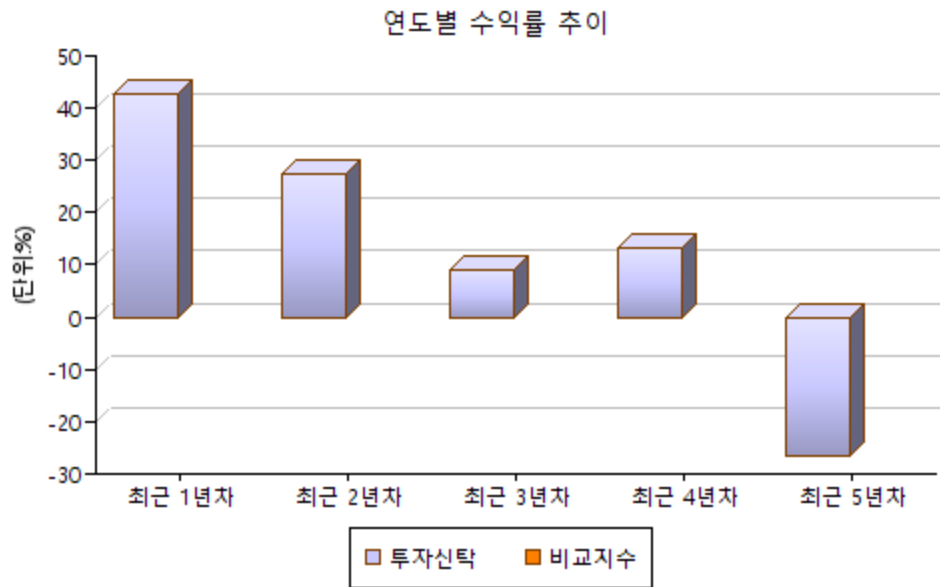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12) 삼성뉴딜코리아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_C-Pe(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연도	최근 1년차 (25.10.15 ~26.10.14)	최근 2년차 (24.10.15 ~25.10.14)	최근 3년차 (23.10.15 ~24.10.14)	최근 4년차 (22.10.15 ~23.10.14)	최근 5년차 (21.10.15 ~22.10.14)
투자신탁	42.91 %	27.31 %	8.92 %	13.43 %	-26.39 %
비교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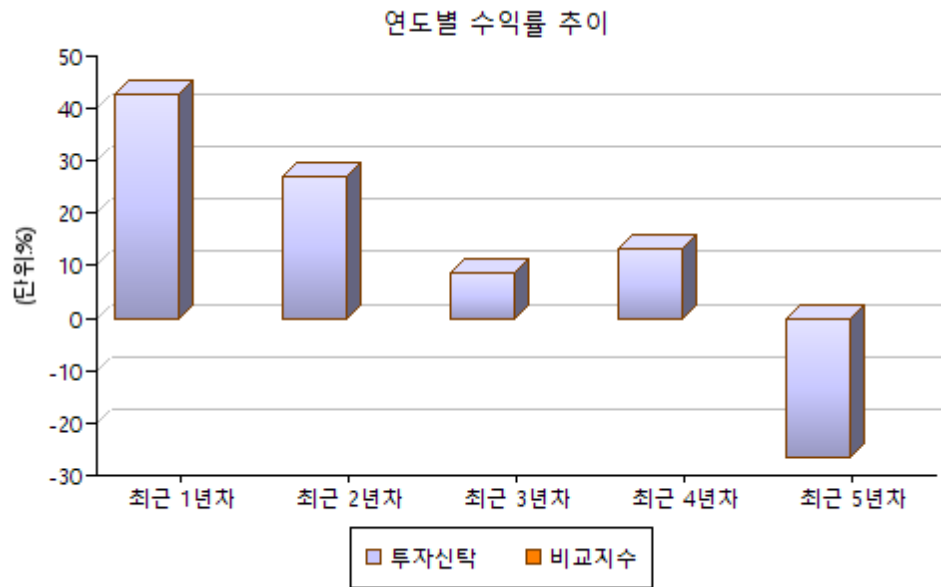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13) 삼성뉴딜코리아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_Cp(퇴직연금)(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연도	최근 1년차 (25.10.15 ~26.10.14)	최근 2년차 (24.10.15 ~25.10.14)	최근 3년차 (23.10.15 ~24.10.14)	최근 4년차 (22.10.15 ~23.10.14)	최근 5년차 (21.10.15 ~22.10.14)
투자신탁	42.66 %	27.07 %	8.72 %	13.22 %	-26.54 %
비교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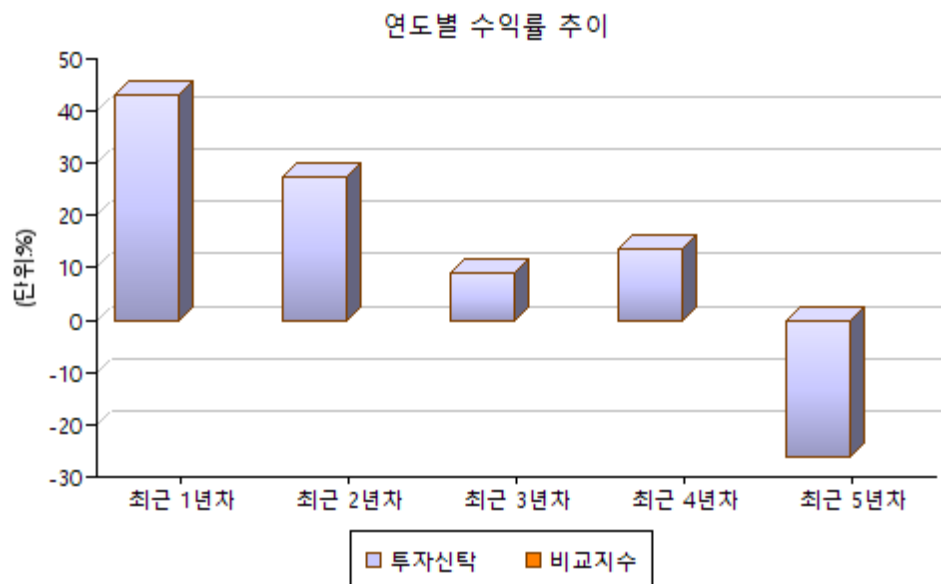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14) 삼성뉴딜코리아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_Cpe(퇴직연금)(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연도	최근 1년차 (25.10.15 ~26.10.14)	최근 2년차 (24.10.15 ~25.10.14)	최근 3년차 (23.10.15 ~24.10.14)	최근 4년차 (22.10.15 ~23.10.14)	최근 5년차 (21.10.15 ~22.10.14)
투자신탁	42.96 %	27.35 %	8.97 %	13.48 %	-26.36 %
비교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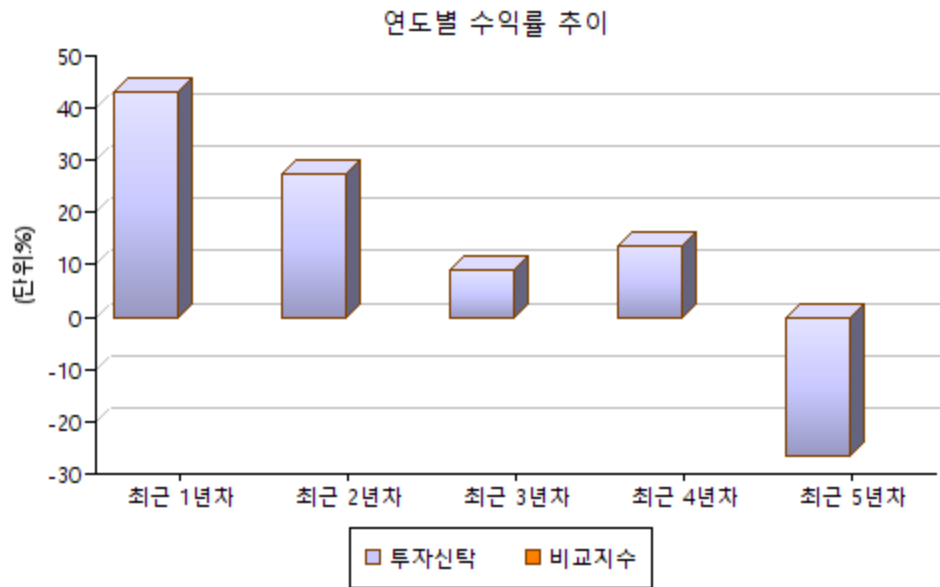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15) 삼성뉴딜코리아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_S(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연도	최근 1년차 (25.10.15 ~26.10.14)	최근 2년차 (24.10.15 ~25.10.14)	최근 3년차 (23.10.15 ~24.10.14)	최근 4년차 (22.10.15 ~23.10.14)	최근 5년차 (21.10.15 ~22.10.14)
투자신탁	42.94 %	27.33 %	8.95 %	13.46 %	-26.38 %
비교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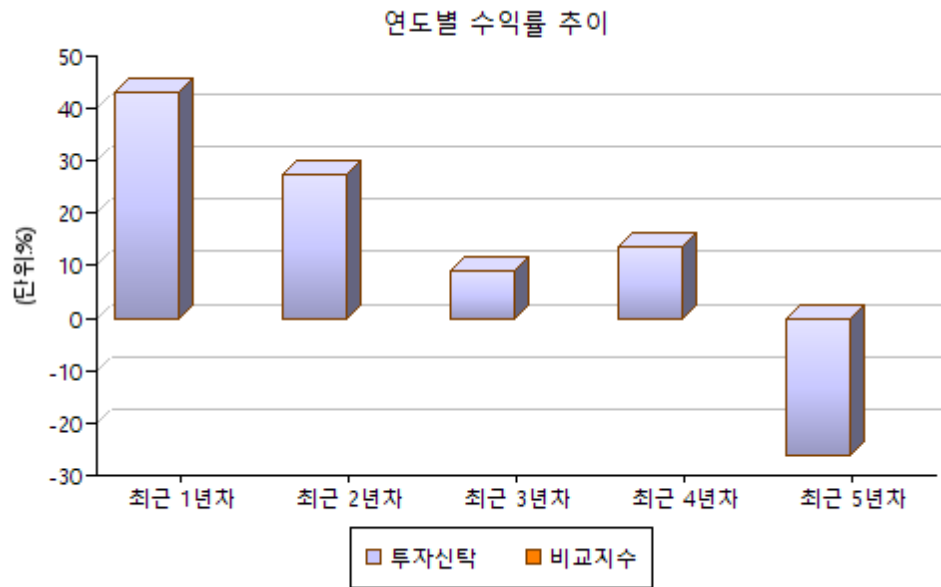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16) 삼성뉴딜코리아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_S-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연도	최근 1년차 (25.10.15 ~26.10.14)	최근 2년차 (24.10.15 ~25.10.14)	최근 3년차 (23.10.15 ~24.10.14)	최근 4년차 (22.10.15 ~23.10.14)	최근 5년차 (21.10.15 ~22.10.14)
투자신탁	43.06 %	27.44 %	9.05 %	13.56 %	-26.31 %
비교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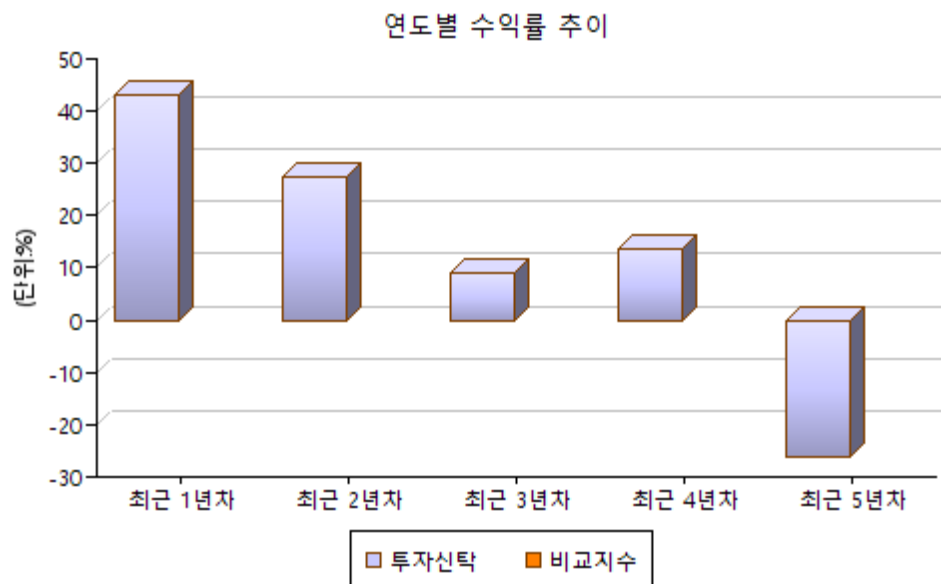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17) 삼성뉴딜코리아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_S-P(퇴직연금)(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연도	최근 1년차 (25.10.15 ~26.10.14)	최근 2년차 (24.10.15 ~25.10.14)	최근 3년차 (23.10.15 ~24.10.14)	최근 4년차 (22.10.15 ~23.10.14)	최근 5년차 (21.10.15 ~22.10.14)
투자신탁	43.08 %	27.46 %	9.06 %	13.57 %	-26.30 %
비교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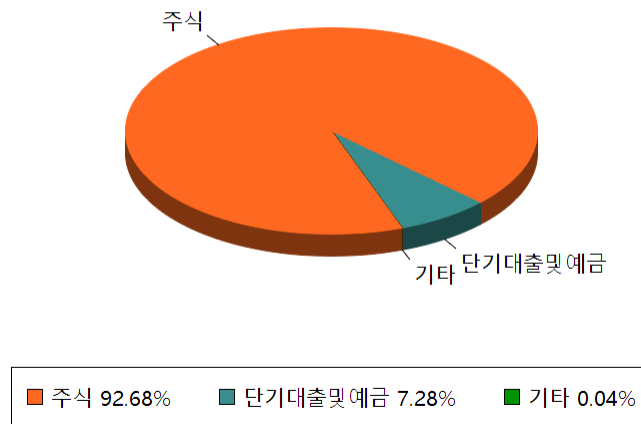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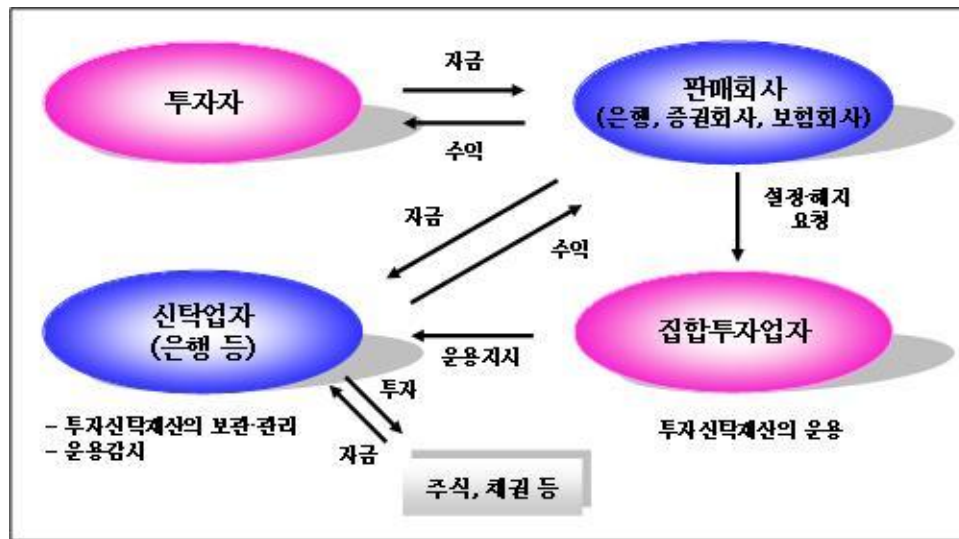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26.06.30 기준, 억원)

통화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파생 결합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381	0	0	0	0	0	0	0	0	0	30	0	411
합계	381	0	0	0	0	0	0	0	0	0	30	0	411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삼성액티브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삼성생명 서초타워 8층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연락처 : 02-3774-7775, http://www.samsungactive.co.kr)
회사 연혁	2017.01.02 설립등기 2019.11.26 2019 대한민국 증권대상 국내펀드부문 최우수상(서울경제신문 주최) 2022.02.15 사학연금 우수 운용 기관 선정
자본금	300억
주요주주현황	삼성자산운용(주)(100%)
사업목적	1.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액티브 주식운용 전략에 의한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1호,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 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다. 투자일임업 라. 투자자문업 2. 자본시장법 및 기타 금융관련 법령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업무 3.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수업무 4. 집합투자기구 또는 증권과 관련된 자료의 출판 및 판매에 관한 업무 5. 집합투자기구 또는 증권과 관련된 재산권, 상표권 등 권리 행사에 관한 업무 6. 상기 각 호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 *위 사업 외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주) 산정 기준일은 2024.1.1일 입니다.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2) 선관 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재무상태표
제9(당)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8(전)기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삼성액티브자산운용주식회사

(단위 : 원)

과목	주식	당기말		전기말	
자 산					
I. 현금및현금성자산	5,26	4,321,361,600		4,079,946,252	
II.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6,27	53,076,340,335		25,878,565,055	
III.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4,7,26	28,799,642,735		56,570,477,570	
IV. 유형자산	8	95,934,082		132,707,957	
V. 사용권자산	9	1,333,051,324		1,688,941,014	
VI. 무형자산	10	865,660,915		969,218,517	
VII. 순확정급여자산	14	345,990,683		560,933,700	
VIII. 이연법인세자산	23	121,396,103		206,184,429	
IX. 기타자산	11	96,221,515		69,249,651	
자 산 총 계			89,055,599,292		90,156,224,145
부 채					
I. 기타금융부채	4,12,26	10,492,687,921		9,072,573,271	
II. 총당부채	13	21,542,826		17,670,737	
III. 당기법인세부채		2,816,172,818		1,794,005,960	
IV. 기타부채	15	335,536,346		259,795,223	
부 채 총 계			13,665,939,911		11,144,045,211
자 본					
I. 자본금	16	30,000,000,000		30,000,000,000	
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6	(668,521,475)		(542,077,972)	
III. 이익잉여금	17	46,058,180,856		49,554,256,906	
자 본 총 계			75,389,659,381		79,012,178,934
부 채 및 자 본 총 계			89,055,599,292		90,156,224,145

포괄손익계산서

제9(당)기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8(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삼성액티브자산운용주식회사

(단위 : 원)

과목	주석	당기	전기
I. 영업수익		35,322,271,758	26,989,622,571
1. 수수료수익	18	29,739,860,047	23,971,705,593
2. 금융상품 평가 및 처분이익	18,22	3,296,168,777	98,492,157
3. 이자수익	18,22	788,225,773	2,229,345,552
4. 외환거래이익	18	3,110,871	3,685,301
5. 배당금수익	18,22	1,494,906,290	686,393,968
II. 영업비용		21,599,775,972	18,129,284,162
1. 수수료비용	19	7,344,948,389	6,819,448,480
2. 금융상품 평가 및 처분손실	19,22	326,981,450	552,999,461
3. 이자비용	19,22	74,656,718	59,143,262
4. 외환거래손실	19	2,096,142	1,108,564
5. 판매비	20	1,122,044,937	467,812,310
6. 일반관리비	20	12,725,176,247	10,228,039,393
7. 기타비용	19	3,872,089	732,692
III. 영업이익		13,722,495,786	8,860,338,409
IV. 영업외손익		(1,250)	(203,931)
1. 영업외수익	21	84,500	84,155
2. 영업외비용	21	85,750	288,086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3,722,494,536	8,860,134,478
VI. 법인세비용	23	3,218,570,586	2,064,944,644
VII. 당기순이익		10,503,923,950	6,795,189,834
VIII. 기타포괄손익		(126,443,503)	(67,663,126)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26,443,503)	(67,663,126)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4	(162,107,055)	(85,541,246)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	23	35,663,552	17,878,120
IX. 당기총포괄이익		10,377,480,447	6,727,526,708
X. 주당이익	25		
1. 기본주당이익		1,751	1,133

라. 운용자산규모

(2026.10.14 현재/억좌)

구분	증권					MMF	특별자산	부동산	혼합자산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 상품	재간접					
수탁고	31,133	1,444	0	0	535	0	0	0	376	33,487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1) 집합투자업자는 아래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해당 펀드	업무위탁사	업무수탁사	업무위탁범위
삼성뉴딜코리아증권투자 신탁 제1호[주식]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내부통제 업무 마케팅 업무 일반사무관리 업무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 개요

회사명	SC제일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47 전화번호 : 1588-1599
회사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standardchartered.co.kr

(2) 주요 업무

-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4)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5)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6) 증권·상환금의 수입
- 7) 여유자금 운용이자 수입
- 8)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1) 의무

- ① 신탁업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계약,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그 밖에 법제247조제5항에서 열거하는 사항

2)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연대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개요

회사명	삼성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전화번호 : 02)3774-7600
회사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samsungfund.com

(2) 주요 업무

- (1) 투자신탁 기준가격의 계산업무 및 공고업무
- (2) 투자신탁의 설정·환매요청 접수의 제한에 대한 공고 업무
- (3) 납부자산구성내역 등의 공고 업무
- (4)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업무
- (5)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른 투자신탁 운영과 관련되는 공시 및 공고
- (6) 상기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KAP)	나이스피앤아이(주)	KIS자산평가	에프앤자산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11층 (현대빌딩) TEL: 02-2251-130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여의도동, 대하빌딩 4층) TEL:02-398-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한국화재보 험협회빌딩) 4층 TEL:02-3215-1416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 중앙2로 61 2층, 3층 TEL: 02-721-5300
회사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bp.com	www.nicepni.com	www.bond.co.kr	www.fnpricing.com

(2) 주요 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1)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2)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3)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수익자총회의 소집

- ①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②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③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의결권 행사 방법

- ①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②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 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

- ③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모자형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에서 의결된 찬반비율에 비례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3) 연기수익자총회

-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②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그 이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익자총회 결의 사항은 없습니다.

-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다만, 신탁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신탁업자는 그러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직전 180일(이하 "손실보상기간") 동안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신탁업자보수율과 손실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이하 "신탁업자 손실보상금")을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신탁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신탁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 4)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손실보상기간 동안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집합투자업자보수율과 손실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 고유재산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법률자문료 등)의 합(이하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을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집합투자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9) 그 밖에 수익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 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가 시행령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1)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 됩니다.
- (2)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집합투자재산 운용 내역서
 - 2)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1)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3)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 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135조 제2항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1) 이 상품의 신탁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수익자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투자신탁의 등록 취소/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일반사모펀드에 한함)법 제 249조의 9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명령을 받은 경우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②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③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1)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2)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①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② 직전의 기준일로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③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④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②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③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④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투자운용인력의 변경/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 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공시

- 1)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다만, 신탁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신탁업자는 손실보상기간 동안의 신탁업자 손실보상금을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신탁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신탁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손실보상기간 동안의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을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집합투자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 ⑦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⑧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2)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samsungactive.co.kr)·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운용한 집합투자 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8) 설정 및 설립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시행령 제24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①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②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2)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이 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4) 수익자에 대한 공고 등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증권의 거래	<p>- 평가 항목</p> <p>중개거래 시장점유율, 거래관련 자격보유여부, 조직 및 인력현황, 리서치 서비스의 질, 감독기관 제재 및 시정조치 내역, 결제안정성, 시장정보 제공능력, 매매체결의 신속성, 거래관련 보안유지 능력, 세미나 개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p> <p>- 선정방법</p> <p>평가방법을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트레이더 등 중개사와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담당자들이 분기 1회 이상 배점방식에 의해 평가항목별 점수를 평가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p>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가. 의무투자

해당사항 없음

나. 투자목적의 투자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어	내용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 투자자에게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의 50%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보수 또는 총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판매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판매 및 관리 등 집합투자증권 매입, 환매 및 투자기간 중 지속적으로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므로, 간접적으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으로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보수, 성과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됩니다. 만약 이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이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상 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용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어	내용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조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판매수수료	판매회사가 판매 또는 환매시 일시에 투자자로부터 받거나 투자기간 동안 분할하여 투자자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수취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지급 받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 등의 명칭으로 구분합니다.
설정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관련 법령 등에서는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